기후변화법제 연구 18-17-⑩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WTO/FTA 합치성 확보방안

이천기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 에너지

## -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WTO/FTA 합치성 확보방안 -

### - A Study on WTO/FTA Consistency of Renewable Energy Subsidies -

연구책임자 : 이천기(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Lee, Cheon-Kee

2018. 10. 31.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연 구 진

| | |
|---|---|
| 연구책임 | 이천기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 심의위원 |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br>이기평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br>이길원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요 약 문

## Ⅰ. 배경 및 목적

### ▶ 기후변화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과 재생에너지 촉진정책

○ 재생에너지의 촉진은 2020년 이후 파리협정에 따른 기후변화 완화목표 달성과 저탄소·에너지효율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국제통상규범과의 합치성 검토 필요성

○ 기후변화 완화 및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활성화 노력은 고무적이나, 향후 우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국제통상규범과의 합치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지원의 다양한 세부 유형을 파악하고 각 유형이 국제통상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함

## Ⅱ. 주요 내용

### ▶ 유형1: 국내부품사용요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재생에너지전기 정부지원

○ 재생에너지의 거래는 전기의 특성상 교역국 간의 지리적·시설적인 제약을 받음. 따라서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무역왜곡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WTO보조금협정의 혜택분석과 관련하여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사건에서 상소기관이 유연한 태도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WTO보조금협정에 불합치될 가능성이 낮음

**▶ 유형2: 국내부품사용요건을 포함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전기 정부지원**

○ 전기의 국경간 거래 유무를 불문하고 그러한 지원조치의 WTO협정 합치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됨

- 실제로, 에너지 보조금과 관련하여 제기된 지금까지의 WTO사건들은 모두 국내부품사용요건과 같은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에 관한 것이었음
- 국내부품사용요건은 재생에너지 발전업자가 발전설비 부품의 일정 비율을 국내적으로 구할 것을 발전차액지원제도 하에서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강제함으로써,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외국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수입상품에 대한 차별대우로서 GATT 제III조 제4항과 TRIMs협정 제2조 제1항에 반할 가능성이 높음. 제III조 제8항 (a)호의 정부조달 예외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음
- 판례를 통해 완전히 확립되지는 않았으나, WTO보조금협정 제3조에서 금지하는 금지보조금을 구성할 가능성도 남아있음

**▶ 유형3: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정부지원**

○ 재생에너지 전기와 달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유형의 상품으로서, 국경간 거래가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지원은 WTO보조금협정에 불합치할 가능성이 높음

##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지원의 다양한 세부 유형을 파악하고 각 유형이 국제통상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을 개정하고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안)>을 보다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가야 할' 요소들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 정책적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주제어 :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보조금,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 Abstract

##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Glob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 Policies to Promote Renewable Energy

○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hereinafter “RE”) is deemed to play a key role in achieving climate change mitigation targets under the Paris Agreement post-2020 and in establishing a successful transition to low-carbon, energy-efficient economy

▶ Conformity of renewable energy support policies with International Trade Law

○ While efforts for such environment are encouraging and inspiring, when our Government's RE support policies moves into higher gear, consistency of those support measures can rise to the surface.

○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identify a variety of detailed sub-types of government support measures implemented to promote development and use of RE, and assess them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trade law.

## Ⅱ. Major Contents

▶ Measure 1: Government Support for RE, without Local Content Requirements

○ Because of the inherent character of electricity, cross-border transactions of renewable energy are influenced by geographical limitation and restricted only to places where relevant infrastructures such as electricity transmission system are already established. Thus possibility of WTO inconsistency is relatively lower.

### ▶ Measure 2: Government Support for RE, with Local Content Requirements

○ Given the fact that disputed subsidy measures in all of the WTO cases related to energy subsides so far contained local content requirements, such measures will very highly likely constitute a violation of relevant WTO provisions, including Article III:4 GATT and Article 2.1 TRIMs.

- As witnessed in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Article III:8(a) cannot be applied for situation where government-procured products (electricity) are not discriminated products (power equipments) themselves.

○ Further, even though not clearly established by case law at this moment, there is a possiblity that such measures constitute a prohibited subsidy under Article 3 of the WTO Subsidies Agreement.

### ▶ Measure 3: Government Support for RE Power Equipments

○ Unlike RE electricity, power equipments for renewable energy generation are tangible products, with which cross-border transactions are very actively taking place already around the globe. For that such support measures will be very like to cause adverse effects in violation of WTO Subsidies Agreement.

## Ⅲ. Expected Effects

○ This study is expected to make a meaningful contribution from both academic and policy perspectives, in that it not only analyzes relevant WTO Panel and Appellate Body findings in its entirety but specifically identifies risk elements that our Government needs to be aware of in materializing and implementing its current "Renewable Energy 3020" plan.

▶ Key Words : climate change, renewable energy, subsidy,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free trade agreeements (FTAs)

CONTENTS

# 목차



요 약 문 ····· 5
Abstract ····· 9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배경 ····· 19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28

제2장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및 동향 / 31

제1절 서 론 ····· 33
제2절 우리나라 ····· 33
1. 발전차액지원제도 ····· 34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 36
(1) 서 ····· 36
(2) 연간 RPS 의무비율 ····· 37
3.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 38
제3절 유럽연합 ····· 39
1. 연합 차원 ····· 39
(1) 2020년 재생에너지 목표: ‘2020년 기후 및 에너지 패키지’에 따른 재생에너지지침(2009/28/EC) 및 연료품질지침(2009/30/EC) ····· 39
(2)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청정에너지패키지 ····· 42
(3)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수정 ····· 44
(4)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 ····· 44
2. 각 회원국 차원 ····· 44
제4절 소 결 ····· 58

## 제3장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국제통상법적 분석 / 59

제1절 서 론 ····· 61
제2절 WTO보조금협정과의 합치성 검토 ····· 62
1. WTO보조금협정 개관 ····· 62
2. 논의의 전제 ····· 64
(1) 정부지원대상으로서의 '재생에너지전기'와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구분 ····· 64
(2) 재생에너지 지원제도 내에 국내부품사용요건의 포함 여부 ····· 65
3. 1단계: WTO보조금협정의 적용 가부 ····· 66
(1)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 ····· 66
(2) 그로 인한 혜택의 발생 ····· 67
1) 재생에너지 '전기'에 대한 정부지원의 경우 ····· 68
2)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 부품'에 대한 정부지원의 경우 ····· 71
(3) 기업(군) · 산업(군)에 대한 특정성 ····· 72
1) WTO보조금협정 제2조의 구조 ····· 72
가. 제2조 제1항: 일반원칙 ····· 72
① 1단계: 보조금의 교부대상 ····· 73
② 2단계: 특정성의 판단기준 ····· 75
나. 제2조 제2항: 지역특정성 ····· 77
2) 재생에너지 정부지원의 특정성 유무 ····· 78
가. 재생에너지 '전기'에 대한 정부지원의 경우 ····· 78
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 부품'에 대한 정부지원의 경우 ····· 79
4. 2단계: WTO보조금협정상 어떠한 보조금 유형에 해당되는지 ····· 79
5. 3단계: 수출국 보조금 교부로 인한 수입국에의 부정적 효과의 발생 여부 ····· 81
(1) 논의의 전제 ····· 81
(2) 재생에너지 '전기'에 대한 정부지원의 경우 ····· 83
1) 국내부품사용요건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 83
2) 국내부품사용요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 ····· 83

가. 원 칙 ····· 83
나. 예외적인 경우 ····· 84
(3)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 부품'에 대한 정부지원의 경우 ····· 86
1) 국내부품사용요건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 86
2) 국내부품사용요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 ····· 86
6. 소 결 ····· 88
제3절 GATT 및 TRIMs협정과의 합치성 검토 ····· 96
1. 문제의 소재 ····· 96
2. 제III조 제8항 (a)호의 해석 ····· 97
(1) 요건1: 문제된 조치가 "상품의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 또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99
1) 패널의 입장 ····· 99
2) 상소기관의 입장(패널판정 파기) ····· 99
3) 평 가 ····· 100
(2) 요건2: 조달이 "정부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 103
(3) 요건3: "상업적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재화의 생산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조달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104

제4장 결 론 / 107

참고문헌 ····· 113

# 제1장
#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1992년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1]은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달성"[2]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전지구적 차원의 대응을 보여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구평균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번 세기의 후반기 동안에는 0에 수렴해야 한다는 전망을 내놓았던 바 있다.[3] 2℃ 목표는 파리협정에도 명시되었다.[4] 파리협정에서는 모든 당사국들이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를 통해 이러한 목표 달성에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5]

에너지 부문은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원으로서,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이 중 화석연료가 80%를 차지하고, 그 중 40%는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된 전기로

1)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 9 May 1992, 771 UNTS 107.

2) UNFCCC 제2조.

3)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Summary for Policymakers", in Ottmar Edenhofer et al. (eds.), *Climate Change 2014: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Working Group III Contribution to the Fif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 12.

4) 파리협정 제2조 제1항 (a)호. "이 협정은, [...] 다음의 방법을 포함하여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 [...] 산업화 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2도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및 산업화 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의 추구."

5) 파리협정 제3조 및 제4조 제2항.

인해 발생한다.[6] 따라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로 대체하는 작업은 기후변화와 완화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2℃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이다.[7] 발전 부문이 이러한 정부지원 정책의 주된 대상이어 왔다.[8] 전력 부문은 하나의 단일 산업 부문으로서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배출원이다. 2014년 기준 전세계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의 약 40%를 차지하였다.[9] 이러한 정부지원 결과 전력 부문은 탈탄소화를 위한 진전 측면에서 가장 빠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신규 등록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만 해도 전년 대비 9.3%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앞으로도 화석에너지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10]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재생에너지가 이러한 성장세를 보여온 것은 발전 부문에서 다양한

6) International Energy Agency, *Redrawing the Energy-Climate Map - World Energy Outlook Special Report*, IEA, 2013, p. 15; International Energy Agency, *Energy and Climate Change - World Energy Outlook Special Report*, IEA, 2015, p. 20, available at: https://www.iea.org/publications/freepublications/publication/WEO_Special_Report_2013_Redrawing_the_Energy_Climate_Map.pdf; https://www.iea.org/publications/freepublications/publication/WEO2015SpecialReportonEnergyandClimateChange.pdf. [2018.10.21. 최종방문]

7) 예를 들어 2016년에 전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모는 1천 400억 달러 규모였다. 단, 동년에 화석연료 보조금은 2천 600억 달러로 이를 상당 수준 초과하였다. IEA, "Commentary: Fossil-fuel Consumption Subsidies Are Down, But Not Out" (2017.12.20.자), available at: https://www.iea.org/newsroom/news/2017/december/commentary-fossil-fuel-consumption-subsidies-are-down-but-not-out.html. [2018.10.19. 최종방문] 단, 이러한 지원수준 차이는 최근에는 국제에너지가격의 하락, 전세계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IEA, *World Energy Outlook 2016: Executive Summary*, 2016, p. 1;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 "Rethinking Energy 2017: Accelerating the Global Energy Transformation (2017)", p. 9, available at: https://www.iea.org/publications/freepublications/publication/WorldEnergyOutlook2016ExecutiveSummaryEnglish.pdf; https://www.irena.org/documentdownloads/publications/irena_rethinking_energy_2017.pdf. [2018.10.21. 최종방문]

8) 2015년 기준으로 110개 국가들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리고 운송 부문과 냉·난방 부문에서 각각 66개국과 21개국이 지원정책을 시행하였다. 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RENEWABLES 2016 - GLOBAL STATUS REPORT*, REN21, 2016, p. 112, available at: http://www.ren21.net/wp-content/uploads/2016/05/GSR_2016_Full_Report_lowres.pdf. [2018.10.21. 최종방문]

9) International Energy Agency, *supra* note 6, 2015, p. 27.

10)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 *supra* note 7, pp. 18-20.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15년에 전세계 전력의 76%가 비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되었다. Ilaria Espa, Gracia Marín Durán, "Renewable Energy Subsidies and WTO Law: Time to Rethink the Case for Reform Beyond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21(3)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2018, p. 624.

유형의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일부 기인한 것이므로, 이후 살펴볼 바와 같이 국제통상법적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재생에너지 보조금'이라는 일반적 범주 하에 다양한 유형의 정부지원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추구목적이나 국제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조치마다 매우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재생에너지 정부지원은 환경적 시각에서는 '좋은' 재생에너지 보조금이나 국제통상규범 측면에서는 WTO협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가 국제통상법적으로 문제되었던 전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제도 구축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세에 맞물려 2010년 이후 재생에너지 지원 조치에 대한 WTO제소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1995년 1월 1일 WTO의 출범 이래 2018년 10월까지 567건의 사건이 WTO분쟁해결제도로 회부되었고,[11] 1995년 출범한 WTO분쟁해결제도에서 '에너지'나 '연료'에 관해 제소가 이루어진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1] 에너지 및 연료와 관련된 WTO사건 목록**

| | 분쟁대상 | 사건번호 | 사건명 |
|---|---|---|---|
| ① | 바이오디젤 | DS443 | European Union and a Member State - Certain 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of Biodiesels |
| | | DS459 | European Union and Certain Member States–Certain Measures on the Importation and Marketing of Biodiesel and Measures Supporting the Biodiesel Industry |
| | | DS473 | European Union - Anti-Dumping Measures on Biodiesel from Argentina ("EU - Biodiesel") |
| | | DS480 | European Union - Anti-Dumping Measures on Biodiesel from Indonesia ("EU - Biodiesel (Indonesia)") |

11) *See* WTO, *Chronological list of disputes cases*, available at: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 [2018.10.19. 최종방문]

| | 분쟁대상 | 사건번호 | 사건명 |
|---|---|---|---|
| ② |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 DS449 | United States -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Products from China ("US -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Measures (China)") |
| | | DS452 | European Union and certain Member States - 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Sector |
| | | DS510 | United States - Certain Measures Relating to the Renewable Energy Sector ("US - Renewable Energy") |
| ③ | 환경과징금 | DS421 | Moldova -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and Internal Sale of Goods (Environmental Charge) ("Moldova - Environmental Charge") |
| ④ |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 DS412 | Canada - 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Sector ("Canada - Renewable Energy") |
| | | DS426 | Canada - Measures Relating to the Feed-in Tariff Program ("Canada - Feed-In Tariff Program") |
| ⑤ | 휘발유 | DS2 | United States - 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 ("US - Gasoline") |
| | | DS4 | United States - 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 ("US - Gasoline") |
| ⑥ | 재활용비 | DS462 | Russian Federation - Recycling Fee on Motor Vehicles ("Russia - Motor Vehicles") |
| | | DS463 | Russian Federation - Recycling Fee on Motor Vehicles |
| ⑦ | 태양에너지 | DS456 | India - Certain Measures Relating to Solar Cells and Solar Modules ("India - Solar Cells") |

| | 분쟁대상 | 사건번호 | 사건명 |
|---|---|---|---|
| ⑧ | 태양광패널 | DS437 | United States - Countervailing Duty Measures on Certain Products from China ("US - Countervailing Measures (China)") |
| ⑨ | 풍력발전설비 | DS419 | China - Measures concerning wind power equipment |
| | | DS437 | United States - Countervailing Duty Measures on Certain Products from China ("US - Countervailing Measures (China)") |

* 출처: WTO웹사이트 공식 분쟁해결목록을 기초로 저자가 추가 정리.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 [2018.10.31. 최종방문]

이 중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보조금)'과 관련된 사건은 아래 [표2]와 같이 6건이다.[12)]

12) 단, 수출회원국의 국내산업 보조금 교부에 대해, WTO보조금협정 하에서 수입회원국은 (ⅰ) 수출회원국을 WTO에 제소하는 다자적 접근법, (ⅱ) 수출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상계조치를 취하는 일방적 접근법 등 두 가지 접근법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보조금제도를 두고 WTO제소는 지금까지 6건 밖에 없는 반면, (ⅱ)번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는 이미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태양광패널에 대해 미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한 건이 있고, 유럽연합도 중국산 태양광패널이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하였다가 중국과 유럽연합 간 협상을 통해 조사가 종료되었던 바 있다. Henok Birhanu Asmelash, "Energy Subsidies and WTO Dispute Settlement: Why Only Renewable Energy Subsidies Are Challenged", *18(2)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2015, pp. 274-275.
한편 보다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환경적으로 유해한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WTO제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흥미롭다. IEA, "Commentary: Fossil-fuel Consumption Subsidies Are Down, But Not Out" (2017.12.20.자), available at:
https://www.iea.org/newsroom/news/2017/december/commentary-fossil-fuel-consumption-subsidies-aredown-but-not-out.html. [2018.10.19. 최종방문]

**[표2] 재생에너지 관련 WTO사건 목록**

| 사건 번호 | 사건명 | 경 과 | 문제된 조치·내용 |
|---|---|---|---|
| DS 412/ 426 | Canada - Renewable Energy / Feed-In Tariff Program | ▪ 협의요청: 2010.9.13.<br>▪ 패널설치요청(일본): 2011.6.1.<br>▪ 패널설치요청(EU): 2012.1.9.<br>▪ 패널설치(일본): 2011.7.20.<br>▪ 패널설치(EU): 2012.1.20.<br>▪ 패널보고서 회람: 2012.12.19.<br>▪ 상소기관보고서 회람: 2013.5.6.<br>▪ 패널·상소기관보고서 채택: 2013.5.24. | ▪ 재생에너지전기 발전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br>- 태양광·풍력 발전업자에 대해,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생산된 발전설비를 사용할 것을 발전차액지원의 조건으로 함[3] |
| DS 419 | China - Wind Power Equipment | ▪ 협의요청: 2010.12.22.<br>▪ 중국의 문제된 조치 철회. 패널설치요청을 하지 않기로 분쟁당사국간 합의.[14] | ▪ 풍력발전설비 제조업자에 대한 지원<br>- 국내적으로 생산된 부품의 사용을 지원의 조건으로 함 |

13) 한편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FIT 프로그램에 대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하에서도 2011년 7월에 제소가 이루어졌다. 미국 내 위치하고 있는 미국 국적의 재생에너지 기업인 Mesa Power사는 NAFTA 제11장에 근거하여 소를 개시하였으며, 온타리오 주의 FIT 프로그램이 NAFTA상의 투자규범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Mesa Power사는 온타리오주 남서부 지역에 걸쳐 다양한 풍력발전지역을 운영하고 있었다. Mesa Power사는 온타리오 주가 일부 풍력발전 건에 있어 계약조건을 변경하고 국내부품사용요건을 부과하고, 캐나다 국적의 기업들과 온타리오 지역 내 위치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기업에게 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여 NAFTA 제1102조 내국민대우의무와 제1103조 최혜국대우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7억 7천 5백만 캐나다 달러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였다. Mesa Power's Notice of Intent to Submit A Claim to Arbitration under Section B of Chapter 11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MESA POWER GROUP, LLC v. GOVERNMENT OF CANADA*, available at: http://www.international.gc.ca/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topics-domaines/disp-diff/mesa.aspx?lang=eng. [2018.10.19. 최종방문]

14) USTR, "China Ends Wind Power Equipment Subsidies Challenged by the United States in WTO Dispute", Press Release (06/07/2011), available at: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1/june/china-ends-wind-power-equipment-subsidies-challenged. [2018.10.19. 최종방문]

| 사건 번호 | 사건명 | 경 과 | 문제된 조치 · 내용 |
|---|---|---|---|
| DS 452 | European Union and certain Member States - 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Sector | ▪ 협의요청: 2012.11.5. | ▪ 재생에너지전기 발전업자에 대한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발전차액지원제도<br>- 태양광 발전 전기에 대해, 국내 생산된 발전설비를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함 |
| DS 456 | India - Certain Measures Relating to Solar Cells and Solar Modules ("India - Solar Cells") | ▪ 협의요청: 2013.2.6.<br>▪ 패널설치요청: 2014.4.14.<br>▪ 패널설치: 2014.5.23.<br>▪ 패널보고서 회람: 2016.2.24.<br>▪ 상소기관보고서 회람: 2016.9.16.<br>▪ 패널 · 상소기관보고서 채택: 2016.10.14. | ▪ 태양광 발전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br>- 국내 생산된 태양전지 및 태양광 모듈의 사용을 조건으로 함 |
| DS 459 | European Union and Certain Member States - Certain Measures on the Importation and Marketing of Biodiesel and Measures Supporting the Biodiesel Industry | ▪ 협의요청: 2013.5.15. | ▪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에 대한 프랑스와 벨기에의 소비세 감면<br>- 유럽연합 역내에서 생산된 바이오연료만이 소비세 감면 자격이 있음 |

| 사건 번호 | 사건명 | 경 과 | 문제된 조치·내용 |
|---|---|---|---|
| DS 510 | United States - Certain Measures Relating to the Renewable Energy Sector ("US - Renewable Energy") | ▪ 협의요청: 2016.9.9.<br>▪ 패널설치: 2017.1.17.<br>▪ 패널구성: 2018.4.24. | ▪ 미국의 8개 주에서 시행한, 재생에너지 발전업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부품 제조업체, 바이오디젤·에탄올 유통업체에 대한 재정·금융조치.[15]<br>- 캘리포니아주, 매사추세츠주, 미시간주, 워싱턴주의 경우: 국내 생산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부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함<br>- 몬태나주: 주 내에서 생산된 바이오디젤에만 세금환급. 주 내에서 생산된 에탄올의 경우 이보다 높은 수준의 세금감면. |

* 출처: WTO웹사이트 공식 분쟁해결목록을 기초로 저자가 추가 정리.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

위 [표2]에서 확인가능하듯, 6건의 재생에너지 관련 사건 중 DS459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에서는 재생에너지 전력 부문에 대한 정부지원이 문제된 사건이며 특히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FIT)가 문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 이후 살펴볼 바와 같이 발전차액지원제도 자체가 WTO규범에 불합치한다기 보다는 동 제도에 부속되어 있는 국내

15) 예를 들어, (ⅰ) 재생에너지 발전업자에 대한 원가보상지불. 재생에너지전기가 워싱턴 주에서 제조된 재생에너지 발전잔비를 사용하여 생산된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급, (ⅱ) 에너지저장기술시설을 캘리포니아주 공급업자가 설치하도록 할 경우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일정 자격을 갖춘, 로스앤젤레스에서 제조된 태양광 설비의 제조업자에게 신용공여, (ⅲ)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일정 자격을 갖춘 제조업체의 부품을 사용할 경우 상업용 및 주거용 태양광온수급탕시스템 설치에 대한 세금환급, (ⅳ) 국산재료를 사용하여 몬태나주 내에서 생산된 에탄올/바이오디젤의 유통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및 환급, (ⅴ) 미시간주에서 생산된 설비를 사용하거나 미시건주 주민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고용하여 건설된 재생에너지시설에서 생상된 친환경 전력에 대한 신용공여. *United States - Certain Measures Relating to the Renewable Energy Sector*,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by India, WT/DS510/2, 24 January 2017.

부품사용요건[16]이나 금전적 인센티브[17]와 같은 동 조치 내 '차별적' 요소만이 문제되어 왔다는 점이 중요하다.[18] 이러한 요소는 국내 경기부양 및 산업보호를 위한 수단에 가까우며,[19] 환경적으로 실제 기여하는 바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20] 실제로, 위 6건 중 현재 WTO패널 및 상소기관 보고서가 채택된 사건인[21] 2013년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사건, 2016년 India - Solar Cells 사건 등 2개 사건 모두에서 상소기관은 문제된 조치에 부속되어 있는 국내부품사용요건이 GATT 제III조 제4항

16) DS412/426, DS452, DS456. 국내부품사용요건이란 "정부가 [...] 국내적으로 생산된 상품이나 국내적으로 제공된 서비스를 사용할 것을 기업에게 요구하는 정책(policies imposed by governments that require firms to use domestically manufactured goods or domestically supplied services)"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인도는 태양광패널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외국 국적의 기업들에게 인도산 부품을 일정 비율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국내부품사용요건을 시행하였던 바 있다. 또는 최종상품에 포함된 수입국 국산부품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조건으로, 외국부품의 수입업자에게 관세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다. OECD, "The economic impact of local content requirements", *Trade Policy Note*, 2016.2., pp. 1, 4.

17) DS419, DS459, DS510.

18) 국가들은 선진국,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투입재나 부품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내산업을 부양하기 위해 에너지, 자동차,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국내부품사용요건을 활용해 왔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국내부품사용요건의 사용이 급증하였다. <Global Trade Alert>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이 국내부품사용요건을 자주 사용해왔으며, 특히 브라질과 인도가 주요 사용국이다. 브라질의 경우 정보통신기술, 미디어, 재보험, 섬유, 기계장치, 석유 및 가스와 같은 주요 산업에 국내부품사용요건을 부과해왔다. Hanna Deringer, Fredrik Erixon, Philipp Lamprecht, Erik van der Marel, "The Economic Impact of Local Content Requirements: A Case Study of Heavy Vehicles", *ECIPE OCCASIONAL PAPER 1/2018*, 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2018, pp. 2, 3; OECD, *supra* note 16, p. 10.

19) 국내부품사용요건은 외국 재생에너지 상품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니 않도록 국내 재생에너지 상품을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역량을 육성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는 평가로는 다음을 참조. Aditya Sarmah, "Renewable Energy and Article III:8(a) of the GATT: Reassessing the Environment-Trade Conflict in Light of the 'Next Generation' Cases", *9(2) Trade, Law and Development*, 2017, p. 208.

20) 국내부품사용요건이 태양광 및 풍력발전에 대한 국제투자를 위축시키는 주된 장애물로 작용하며, 새로운 유형의 위장된 보호무역조치라는 비판으로는 다음을 각각 참조. Geraldine Ang, "Overcoming barriers to international investment in clean energy", *Investment Insights*, OECD, 2015, p. 3; Eckart von Unger, "Local Content Requirements: Back-door Protectionism?", BDI(2016.6.27.자), available at: https://english.bdi.eu/article/news/local-content-requirements-back-door-protectionism. [2018.10.21. 최종방문]

21) 나머지 사건들은 아직 협의 단계에 있거나 패널심이 진행 중에 있다(US - Renewable Energy 사건), *United States - Certain Measures Relating to the Renewable Energy Sector,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by India*, WT/DS510/2, 24 January 2017.
분쟁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패널설치를 요청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China - Wind Power Equipment 사건). USTR, "China Ends Wind Power Equipment Subsidies Challenged by the United States in WTO Dispute", Press Release (06/07/2011), available at: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1/june/china-ends-wind-power-equipment-subsidies-challenged. [2018.10.19. 최종방문]

및 TRIMs협정 제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았다.[22] 반면 발전차액지원제도 자체의 WTO보조금협정과의 합치성에 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23]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조금에 대한 일방적 구제조치 즉 상계관세 또한 최근 들어 잦아지고 있으며, 점점 많은 국가들이 무역구제 조치를 재생에너지 보조금에 대한 주된 견제수단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24]

##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UNFCCC 및 파리협정에서의 기후변화 완화 노력과 맞물려 이처럼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지원이 점차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첫째, 지금까지 각국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 및 조치가 문제되었던 국제분쟁사례들을 국제통상법의 시각에서 조명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제도 구축에 참고할 수 있을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다양한 재생에너지 정부지원 유형이 각각 어떠한 WTO협정

22) Appellate Body Report,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Program*, para 5.85; Appellate Body Report, *India - Certain Measures Relating to Solar Cells and Solar Modules*, paras. 5.41, 6.2.

23)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WTO보조금협정상 보조금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혜택(benefit)"에 대한 패널의 판단을 파기하면서, 혜택분석에 필요한 사실관계가 패널 단계에서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며 혜택의 유무에 관해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둘째, India - Solar Cells 사건에서는 제소국 미국이 WTO보조금협정에 근거한 청구를 철회하였다. *India - Certain Measures Relating to Solar Cells and Solar Modules, Request for Consultations by the United States (Addendum)*, WT/DS456/1/Add.1, 13 February 2014.

24)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WTO회원국들의 국내적인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 건수는 WTO분쟁해결제도에 접수된 소송 건수(6건)를 "훨씬 초과(far outnumbers)"하고 있다는 설명으로는 다음을 참조.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Trade Remedies: Targeting the Renewable Energy Sector*, 2014, p. 13.
2008-2014년 초 사이에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개시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는 41건이었다(덤핑 26건, 보조금 15건). 이 중 18건이 태양전지나 태양광모듈 등 태양광발전설비 및 부품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고, 7건이 풍력타워(wind tower) 등 풍력발전설비 및 부품, 나머지 16건이 바이오디젤, 에탄올 등 바이오연료에 관한 것이었다. *Ibid*., pp. 3-4. 41건 중 유럽연합이 18건으로 가장 많은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그에 이어 미국이 8건, 중국 5건, 호주와 인도가 각각 4건, 페루가 2건의 조사를 개시하였다. *Ibid*., p. 4;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UNEP, *Trade and Green Economy - A Handbook*, 2014, p. 105, available at: http://unctad.org/en/PublicationsLibrary/ditcted2014d3_en.pdf;
https://www.iisd.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s/trade-green-economy-handbook-third-edition-en.pdf. [2018.10.19. 최종방문]

규정에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대다수 선행연구에서는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사건에서 문제가 된 '보조금' 정의 및 혜택 분석 등 WTO보조금협정의 적용가능성에 주목해 왔으나, WTO보조금협정 뿐 아니라 GATT나 TRIMs협정 등 WTO협정 전반에 걸친 법적 분석을 수행해오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후변화 완화 및 재생에너지 촉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유럽연합 및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지원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법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발굴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안)>에 따라 우리나라도 민간발전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할 예정인만큼, 다양한 지원유형 중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본고의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25]

셋째, 우리나라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는 신에너지를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26]로, 재생에너지를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27]로 정의하여, 수소에너지나 연료전지와 같은 신에너지를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와 하나의 범주 내에 넣고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가들은 신에너지를 재생에너지와 구분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만 정부지원 등을 통해 생산 및 사용을 촉진하고 있는 상태이다.[28]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안)>에서도 협의의 재생에

25)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재생에너지 지원에 활용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2015년 말을 기준으로 110개 국가·주·지역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운영 중이었다. 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supra* note 8, p. 8.

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제1항.

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제2항.

28) 영국, 인도 등 오로지 일부 국가들에서만 우리나라와 같이 수소에너지, 연료전지와 같은 신에너지를 전통적인 재생에너지와 같은 하나의 범주 내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신에너지 등을 배제한 "재생에너지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다음을 참조. "신재생에너지법, 신에너지·비재생 폐기물 에너지 배제한 '재생에너지법'으로 개정 -IEA 국제기준에 따른 재생에너지만 지원해야", 산업일보(2018.10.1.자).

너지를 두고 에너지믹스 비율을 제고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 및 그 밖의 산업육성책을 계획 중에 있다. 이에 본고에서도 신에너지를 배제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제2장
#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및 동향

제1절 서 론
제2절 우리나라
제3절 유럽연합
제4절 소 결

# 제2장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및 동향

## 제1절 서 론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과거 2001~2011년 운영되었던 발전차액 지원제도, 2012년부터 운영되어 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그리고 2017년 12월 발표된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안)>을 살펴보고, 재생에너지 촉진 및 지원정책에 있어 전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유럽연합에서의 재생에너지 관련 법제 및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제2절 우리나라

2020년 이후 적용될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약속(국가별 기여방안)을 이행하고 친환경 청정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2017년 12월 2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행계획(안)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공공・민간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친환경 청정에너지로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2011년 12월에 중단되었던 발전차액제도(Feed-in Tariff: FIT)를 한시적으로 5년간 재도입하여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업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재생에너지에 대해 양 제도가 결합된 형태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이행될 예정이다.[29]

29)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2017.12., 4면.

## 1. 발전차액지원제도

우리나라의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FIT)는 2001년 출범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었다. 법률 제10253호(2010.4.12.)에 의해 폐지되기 이전까지, (구)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7조(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을 발전원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가격을 고시"[30]하도록 하여,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고정가격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관해 규정하였다.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적용을 받는 재생에너지 발전업자는 전력거래소(Korea Power Exchange: KPX)에서 입찰에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전력망에 고정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으며,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매입하였다. 정부는 수혜대상인 재생에너지 발전업자에게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정한 가격수준과 실제 매매가격 사이의 차이만큼을 보상해주었다.[31] 정부는 소규모 수력발전, 바이오매스 및 폐기물 발전업자에 대해 5년간 고정가격을 보장하였고, 풍력 및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15년간 고정가격을 보장하였다.

2002년에 정부는 풍력발전 250MW, 태양광발전 20MW 이상 재생에너지전기에 대해서는 지원 상한을 추가하였다. 정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 하에서 40개 발전시설을 대상으로 110MW의 재생에너지전기에 관해, 2002년~2004년 동안 117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였다.[32] 이후 2008년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은 2008년 10월 발효하였다. 이로써 태양광발전의 기준가격은 하향조정되었고, 발전차액지원제도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태양광 발전용량 상한은 기존 100MW에서 500MW로 상

30) (구)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7조 제1항.

31) (구)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7조 제2항.
*See* also International Energy Agency, "Policies and Measures - Korea - Feed-in Tariff for renewable energy", available at: https://www.iea.org/policiesandmeasures/pams/korea/name-22121-en.php. [2018.10.21. 최종방문]

32)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bid.*

향조정되었다.[33] 그리고 2009년부터는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에 대해 매년 일정 비율(각각 4%, 2%)로 보장가격이 하향조정되었다.[34]

**[표3] 발전기술별 지원기준 및 지원가격**

| 전원 | | 적용설비 용량기준 | 구 분 | | 기준가격(원/kWh) | | 비고 |
|---|---|---|---|---|---|---|---|
| | | | | | 고정요금 | 변동요금 | |
| 풍력 | | 10kW이상 | - | | 107.29 | - | 감소율 2% |
| 수력 | | 5MW이하 | 일반 | 1MW이상 | 86.04 | SMP+15 | |
| | | | | 1MW미만 | 94.64 | SMP+20 | |
| | | | 기타 | 1MW이상 | 66.18 | SMP+ 5 | |
| | | | | 1MW미만 | 72.80 | SMP+10 | |
| 폐기물 소각 (RDF 포함) | | 20MW이하 | - | | - | SMP+ 5 | 화석연료 투입비율 : 30%미만 |
| 바이오 에너지 | LFG | 50MW이하 | 20MW 이상 | | 68.07 | SMP+ 5 | |
| | | | 20MW 미만 | | 74.99 | SMP+10 | |
| | 바이오 가스 | 50MW이하 | 150kW 이상 | | 72.73 | SMP+10 | |
| | | | 150kW 미만 | | 85.71 | SMP+15 | |
| | 바이오 매스 | 50MW이하 | 목질계 바이오 | | 68.99 | SMP+ 5 | |
| 해양 에너지 | 조력 | 50MW이상 | 최대조차 8.5m이상 | 방조제유 | 62.81 | - | |
| | | | | 방조제무 | 76.63 | - | |
| | | | 최대조차 8.5m미만 | 방조제유 | 75.59 | - | |
| | | | | 방조제무 | 90.50 | - | |
| 연료전지 | | 200kW이상 | 바이오가스 이용 | | 227.49 | - | 감소율 3% |
| | | | 기타연료 이용 | | 274.06 | - | |

* 출처: 신 · 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별표 2의1] 적용대상 전원의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

33) *Ibid.*

34) *Ibid.*

##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 (1) 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무문에서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창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1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가 기존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대체하였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하에서 "공급의무자"[35] 즉 500MW 발전용량 이상의 설비를 갖춘 상위 13개 발전회사들[36]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해야 하는 발전량 즉 "의무공급량"을 부담하고,[37] 2012-2024년 동안 발전총량 대비 재생에너지원 비율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할 의무를 부담한다.[38]

**[표4] 연간 RPS목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2% | 2.5% | 3% | 3% | 3.5% | 4% | 5% | 6% | 7% | 8% | 9% | 10% |

*출처: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IRENA Joint Policies and Measures database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 Korea".

3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제1항.

36)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포스코에너지, SK E&S, GS Power, GS EPS, MPC Yulchon Generation Co. Ltd.

3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38)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IRENA Joint Policies and Measures database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 Korea", available at: https://www.iea.org/policiesandmeasures/pams/korea/name-39025-en.php?s=dHlwZT1yZSZzdGF0dXM9T2s&s=dHlwZT1yZSZzdGF0dXM9T2s. [2018.10.21. 최종방문]

### (2) 연간 RPS 의무비율

RPS 의무비율은 3년마다 재검토되고 재조정되며,[39] 풍력 · 태양광 · 폐기물에너지 · 매립가스 · 조력 · 수력 발전 및 석탄가스화복합발전(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IGCC)을 통해 전기를 생산할 경우 RPS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인정된다.[40]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적용을 받는 발전업자들은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전기를 생산할 경우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RECs)를 받게 된다. 공급인증서 지급량은 사용된 발전기술에 따라 상이하다.

**[표5] 발전기술별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공급인증서<br>가중치</th><th colspan="2">대상에너지 및 기준</th></tr>
<tr><th>설치유형</th><th>세부기준</th></tr>
<tr><td rowspan="12">태양광<br>에너지</td><td>1.2</td><td rowspan="3">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td><td>100kw미만</td></tr>
<tr><td>1.0</td><td>100kW부터</td></tr>
<tr><td>0.7</td><td>3,000kW초과부터</td></tr>
<tr><td>0.7</td><td>임야에 설치하는 경우</td><td>-</td></tr>
<tr><td>1.5</td><td rowspan="2">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br>이용하는 경우</td><td>3,000kW이하</td></tr>
<tr><td>1.0</td><td>3,000kW초과부터</td></tr>
<tr><td>1.5</td><td colspan="2">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td></tr>
<tr><td>1.0</td><td colspan="2">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td></tr>
<tr><td>5.0</td><td rowspan="2">ESS설비(태양광설비 연계)</td><td>’18년,’19년</td></tr>
<tr><td>4.0</td><td>‘20년</td></tr>
<tr><td rowspan="3">기타<br>신 ·<br>재생<br>에너지</td><td>0.25</td><td colspan="2">IGCC, 부생가스, 폐기물에너지, Bio-SRF</td></tr>
<tr><td>0.5</td><td colspan="2">매립지가스, 목재펠릿, 목재칩</td></tr>
<tr><td>1.0</td><td colspan="2">수력, 육상풍력, 조력(방조제 有), 기타 바이오에너지(바이오중유,<br>바이오가스 등),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td></tr>
</table>

3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2항.

40) International Energy Agency, *supra* note 38.

| 구 분 | 공급인증서 가중치 | 대상에너지 및 기준 | |
|---|---|---|---|
| | | 설치유형 | 세부기준 |
| | 1.0~2.5 | 지열, 조력(방조제 無) | 고정형 |
| | | | 변동형 |
| | 1.5 | 수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혼소설비 | |
| | 2.0 | 연료전지, 조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 | |
| | 2.0 | 해상풍력 | 연계거리 5km이하 |
| | 2.5 | | 연계거리 5km초과 10km이하 |
| | 3.0 | | 연계거리 10km초과 15km이하 |
| | 3.5 | | 연계거리 15km초과 |
| | 4.5 | ESS설비(풍력설비 연계) | '18년,'19년 |
| | 4.0 | | '20년 |

*출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별표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발전업자들은 RPS 의무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투자하거나, 또는 (ⅱ) 시장에서 공급인증서를 구매할 수 있다.[41] 발전업자들은 매입한 공급인증서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매년 제출해야 한다.[42]

## 3.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2016년 기준,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총 발전량의 7.0%, 발전설비용량의 12%을 구성하여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다.[43]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에서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총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올리고, 신규 발전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것을 발표하였다.[44]

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제5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4항.
4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
43)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2017.12., 1면.
44) 전게문서, 2면.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주택과 건물에서의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발전을 확대하고 100kW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 지원, 협동조합을 통한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의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농촌 지역에서의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45] 아울러 대형 발전업자의 RPS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46] 폐기물이나 우드펠릿과 같은 연료연소를 통한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축소하는 등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47]

한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에서는 상기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우리나라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 기회"로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단가저감 및 기술추격에 주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을 통한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는 것을 목표로 할 예정이다.[48] 또한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기술과 관련된 규제를 적극적으로 철폐해 나가고,[49]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을 지원하며 외국의 무역장벽 대응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50]

## 제3절 유럽연합

### 1. 연합 차원

#### (1) 2020년 재생에너지 목표: '2020년 기후 및 에너지 패키지'에 따른 재생에너지지침(2009/28/EC) 및 연료품질지침(2009/30/EC)

2009년 재생에너지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RED)[51]은 유럽연합 내에서의 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에너지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정책 전반을 규정한다. 2009년 지침은

45) 전게문서, 4-5면.
46) 전게문서, 6면.
47) 전게문서, 7면.
48) 전게문서, 8면.
49) 전게문서, 9면.
50) 전게문서, 10면.
51) *Directive 2009/2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OJ [2009] L140/16.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유럽연합 총 에너지 소비량의 최소 2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것을 의무화하였다.[52]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첫째,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자국의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할 것을 약속하였다. 유럽연합 각 회원국들의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는 재생에너지지침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목표는 10%(몰타)에서부터 49%(스웨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둘째,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자국 운송 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최소 10%를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의무를 부담한다.[53]

셋째, 2009년 지침은 2020년 목표를 각 유럽연합 회원국이 이행해야 할 국가적 차원의 의무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 지침에 따라,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국가 재생에너지 활동계획(national renewable energy action plans)'을 채택하여, 자국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약속해야 한다.[54] 회원국들은 활동계획에 그러한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어떠한 정책수단을 통해 달성할 예정인지를 기술하고, 자국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 또한 활동계획에는 전기, 냉·난방, 운송 각 부문에서의 재생에너지전기 사용량에 관한 2020년 목표, 협력메커니즘[55]의 활용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넷째, 2009년 지침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된 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조치를 유럽연합 국가보조(State aid)법에 따라 도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56] 아울러 동 지침은 제2조 제(k)항[57]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용을 줄이거나,[58]

52) *Ibid*., 제3조 제(1)항 및 제(4)항.
53) *Ibid*., 제3조 제(1)항 및 제(4)항.
54) *Ibid*., 제4조 및 부속서VII.
55) *Ibid*.,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56) *Ibid*., 제3조 제(3)항.
57) *Ibid*., 제2조 제(k)항. "'support scheme' means any instrument, scheme or mechanism applied by a Member State or a group of Member States, that promotes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by reducing the cost of

판매가격을 상향조정하고,[59] 또는 판매량을 늘리는 방식으로[60] 재생에너지 사용을 진작시킬 수 있을 정부지원조치의 예시목록을 제시하였다.

에너지 관련 배출이 유럽연합 온실가스 배출총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0년 재생에너지 목표는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완화 전략의 핵심이다.[61] 다만, 유럽연합이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이유에는 수입 화석연료에 대한 유럽연합의 의존도 특히 운송부문에서의 석유 수입을 낮춤으로써[62]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즉 2020년 재생에너지 목표는 유럽연합의 역내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63]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산업적 목표는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목표에만 있는 아니며, 다른 국가나 주, 지역의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에도 보통 국내부품사용요건의 형태로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정책적 목표는 WTO협정과의 합치성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관해서는 본고의 제3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

that energy, increasing the price at which it can be sold, or increasing, by means of a renewable energy obligation or otherwise, the volume of such energy purchased. This includes, but is not restricted to, investment aid, tax exemptions or reductions, tax refunds, renewable energy obligation support schemes including those using green certificates, and direct price support schemes including feed-in tariffs and premium payments; [...]" [밑줄첨가]

58) 제2조 제(k)항에 예시된 지원유형 중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및 활용을 위한 자본비용을 줄이기 위한 투자보조, 조세감면, 면세가 여기에 해당된다.

59)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FIT)나 프리미엄지원제도(feed-in premium: FIP)와 같은 직접가격지원제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60)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제도와 같이 재생에너지 최저사용량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61)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on Energy 2020 - A Strategy for Competitive, Sustainable and Secure Energy", COM(2010) 639final, 10 November 2010, p. 2. 그 외에, 2020년 기후 및 에너지 목표에는 (ⅰ) 1990년 수준 대비 온실가스 배출 20% 감축, (ⅱ) 에너지효율 20%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European Council, *Presidency Conclusions - Brussels, 8/9 March 2007*, 7224/1/07, 2 May 2007, pp. 10-12, 19-18.

62) *Directive 2009/2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OJ [2009] L140/16, Preamble, paras. 2, 5.

63) *Ibid*., Preamble, para. 4.

### (2)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청정에너지패키지

2030년의 기후·에너지 목표의 일환으로 유럽연합은 역내 에너지 소비총량의 최소 27%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였으며,[64] 유럽위원회는 2016년 11월 30일에 새로운 재생에너지지침(안)[65]을 포함하는 '청정에너지패키지(Clean Energy Package)'를 제안하였다.[66] 이후 2009년 재생에너지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연합 재생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시작되었으며, 청정에너지패키지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청정에너지패키지는 (ⅰ) 2030년까지 에너지소비의 30% 감축이라는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를 규정하는 '에너지효율지침(Energy Efficiency Directive: EED)'의 개정을 통해 감축목표를 35%로 상향 조정, (ⅱ) 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해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0%까지 감축할 것을 목표로 규정하는 '건물 에너지 성능 지침(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 Directive: EPBD)'의 개정, (ⅲ) 유럽연합의 에너지믹스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7%로 상향조정하는 '재생에너지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RED)'의 개정,[67] (ⅳ)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목표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국내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에너지동맹의 관리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the Governance of the Energy Union)' 등 네 개 법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청정에너지패키지 중에서 지금가지 채택된 유일한 부분은 (ⅱ)번 즉 '건물 에너지 성능 지침'에

64)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on a Policy Framework for Climate and Energy in the period from 2020 to 2030*, COM(2014) 15 final, 22 January 2014, p. 6; European Council, *Conclusions - Brussels, 23-24 October 2014*, EUCO 169/14, 24 October 2014, p. 5.

65)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M(2016) 767 final/2, 23 February 2017.

66) 청정에너지패키지에 대한 작업은 2018년 내에 완성되어 채택될 예정이다. FSR, "EU Clean Energy Package, Online course - Background", available at: http://fsr.eui.eu/training/energy/eu-clean-energy-package. [2018.10.22. 최종방문]

67) 2030년까지 유럽연합 모든 산업부문의 전체 에너지소비의 27%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것이라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목표를 담은 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은 다음을 참조. European Commission, "2030 Energy Strategy", available at: https://ec.europa.eu/energy/en/topics/energy-strategy-and-energy-union/2030-energy-strategy. [2018.10.22. 최종방문]

관한 부분이다. 유럽위원회와 유럽의회,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는 삼자대화를 통해 나머지 3개 법률의 개정에 관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 세 개 기관 사이에 합의에 이를 경우,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는 합의된 법안을 채택하게 된다.[68]

반면 (ⅲ)번에 관해서는 여전히 검토 중에 있으나, 이 재생에너지지침(안)에는 유럽연합 재생에너지 정책에 관한 다수의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반면 현행 2009년 재생에너지지침과는 달리, 각 유럽연합 회원국 차원에서 설정한 국가 목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내용은 아직까지 위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69] 둘째, 위 지침안은 유럽연합 차원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회원국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관하고 있다.

그 중 재생에너지전기에 대해서는, 지침안 제4조(재생에너지원 전기에 대한 재정지원)와 제5조(재생에너지전기 지원제도의 확대)에 따라 회원국들은 유럽연합 국가보조(State aid)법에 따라 지원제도를 계속 이행할 수 있다. 단, 지원조치가 "비용효과적(cost-effective)"이고[70] "시장에 기반을 둔(market-oriented)" 것으로서, 그 구조상 "유럽화된 접근법"을 촉진하고[71] 그러한 접근법으로의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국경간 참여의 확대"를 촉진

68) "One step closer to adopting the Clean Energy Package", Political Intelligence (2018.5.25.자). http://www.political-intelligence.com/one-step-closer-adopting-clean-energy-package. [2018.10.22. 최종방문]

69)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M(2016) 767 final/2, 23 February 2017,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제3조 제3항은 2020년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2020년 수준보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낮출 수 없다는 진전의무를 규정하였다.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3. Union binding overall target for 2030***

1. Member States shall collectively ensure that the shar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in the Union's gross final consumption of energy in 2030 is at least 27%.
2. Member States' respective contributions to this overall 2030 target shall be set and notified to the Commission as part of their Integrated 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s in accordance with Articles 3 to 5 and Articles 9 to 11 of Regulation [Governance].
3. From 1 January 2021 onwards, the shar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in each Member State's gross final consumption of energy shall not be lower than that shown in the third column of the table in part A of Annex I. Member States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compliance with this baseline." [밑줄첨가]

70) *Ibid*., 제5조 제4항.

71)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EXPLANATORY MEMORANDUM*, COM(2016) 767 final/2, 23 February 2017, p. 21: "Article 4 lays down the general principles that Member States may apply when designing cost-effective support schemes to facilitate a market-oriented and

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무와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 (3)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수정

유럽의회는 2018년 1월 18일에 2030년 에너지소비의 35%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단계로서, 유럽위원회 · 유럽이사회 · 유럽의회 사이의 향후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 (4)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

바이오연료(biofuel)와 액체바이오(bioliquid)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운송 부문 10%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생에너지지침은 유럽연합 내에서 생산되거나 소비된 모든 바이오연료에 적용되는 '지속가능성 기준(substantiality criteria)'을 규정하였다. 지속가능성 기준은 바이오연료가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72] 기업들은 자국의 국내제도나 유럽위원회가 인정한 '자발적 제도'를 통해, 자신이 지속가능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일 수 있다.[73]

### 2. 각 회원국 차원

UNFCCC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의 관련 법 제도는 분권화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즉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어떠한 정책수단을 통해 이루어질 것인지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 결과 유럽연합 회원국들마다 재생에너지 지원의 유형과 수준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74]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발전차액지원제도나

---

Europeanised approach, subject to State aid rules."

72) European Commission, "Renewable energy directive", available at: https://ec.europa.eu/energy/en/topics/renewable-energy/renewable-energy-directive. [2018.10.22. 최종방문]

73) *Ibid*.

74) 아울러 국가마다 재생에너지 지원조치의 유형이 다양해지게 된 데에는 각기 다양한 배출특성과 에너지믹스를 보이고 있는 197개 UNFCCC 당사국들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하나의 동일한 접근법을 취할 수는 없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라는 해석으로는 다음을 참조. International Energy Agency, *World Energy Outlook - A Renewable*

프리미엄지원제도와 같은 직접가격지원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전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고(24개 회원국), 그 다음으로 자금지원 및 저리대출(17개 회원국), 조세감면 및 면세(12개 회원국), 최저사용량 의무화 제도를 둔 경우(6개 회원국) 순이다.[75]

[그림1]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재생에너지전기 사용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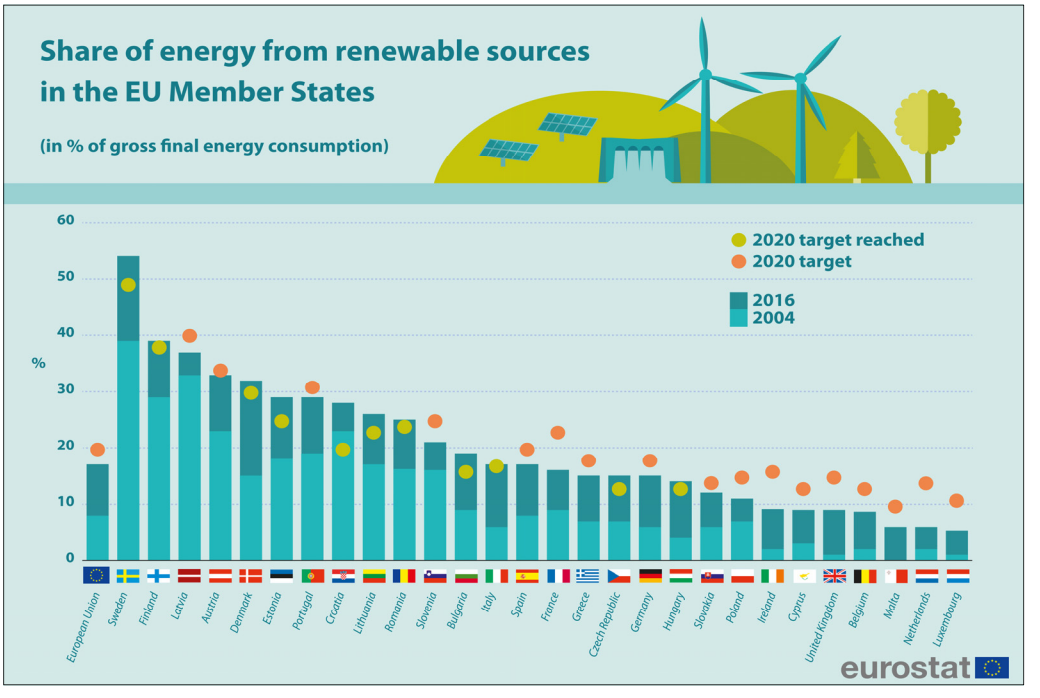


*출처: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mages/c/c3/Figure_1-Share_of_energy_from_renewable_sources_2004-2016.png. [2018.10.22. 최종방문]

2009년 재생에너지지침의 채택 이후, 유럽위원회는 이처럼 회원국마다 지원제도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던 바 있다. 단 유럽위원회는 역내 전기시장이 적절하

*Energy Outlook*, 2012, p. 234.

75) Europea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 Guidance for the Design of Renewable Support Schemes*, SWD(2013) 439 final, 5 November 2013, Table 2, p. 25.

게 작동하고 있지 않고 있고, 보다 긴밀한 상호연결성이 필요한 상태이며, 화석에너지 발전업자에 대한 국내지원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있고 최적의 발전지원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충분한 지식이 축적된 상태가 아니므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통일화(harmonization)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부연하였다.[76]

**[표6] 유럽연합 회원국 차원의 재생에너지 지원 현황**

| | 국 가 | 내 용 |
|---|---|---|
| 1 | 오스트리아[77] | • 오스트리아에서는 재생에너지원 전기 생산에 대한 지원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원수준은 사용된 발전기술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다. 전체 지원금액은 매년 새로 결정된다.<br>• 중·소규모(각각 15, 10MW 미만)의 수력 발전시설에는 투자지원이 이루어지고, 소규모(5kW 미만) 태양광 발전시설에는 보조금이 공여된다.<br>•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한 발전시설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와 보조금 중 한 유형의 지원만이 적용된다. |
| 2 | 벨기에[78] | • 벨기에는 인증서 거래에 기반을 둔 쿼터제도를 두고 있다.<br>• 재생에너지 전기는 전력망에의 연계 및 전력망의 사용에 있어 우선권을 가진다.<br>•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개발, 설치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연방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연구,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업자에 대한 연수, 개발 및 시범(RD&D)을 위한 간접 재정메커니즘 등이 있다. |

76) Europea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 The Support of Electricity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COM(2008) 19final, 23 January 2008, p. 14. 한편 2014년 4월에 채택된 '환경보호 및 에너지를 위한 국가보조지침(Guidelines on State Aid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nergy)' 이후에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던 바 있다. European Commission, *Guidelines on State Aid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nergy 2014 - 2020*, OJ [2014] C 200/1.

77)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Austria",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austria/summary/c/austria/s/res-e/sum/91/lpid/94. [2018.10.22. 최종방문]

78)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Belgium",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belgium. [2018.10.22. 최종방문]

| | 국 가 | 내 용 |
|---|---|---|
| 3 | 불가리아[79] | • 불가리아에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즉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는 발전업자에게는 전력망 운영자에게 계약상 보장된 가격으로 전기를 판매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지원을 받을 수 없다.<br>• 에너지·수자원 규제 위원회(Energy & Water Regulatory Commission: EWRC)가 도매시장과 발전차액지원제도 하에서의 전기의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
| 4 | 크로아티아[80] | • 크로아티아에서는 프리미엄지원제도와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운영 중에 있으며,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저리 대출과 보조금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br>• 재생에너지 전기는 전력망에의 접근에 있어 우선권을 가진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연수도 이루어지고 있다. |
| 5 | 키프로스[81] | • 키프로스에서는 “Support Scheme for PV and Biomass/Biogas 2017” 제도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최대 3kW까지 지원), 그리고 태양광발전 및 바이오매스·바이오가스에 대한 순 전력량 측정제도(net metering scheme)가 운영 중에 있다.<br>• 그 밖의 유형의 재생에너지에는 한시적으로(해당 발전시설의 운영개시 후 12개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적용된다. |

79)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Bulgaria”,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bulgaria/summary/c/bulgaria/s/res-e/sum/112/lpid/111. [2018.10.22. 최종방문]

80)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Croatia”,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croatia. [2018.10.22. 최종방문]

81)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Cyprus”,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cyprus/tools-list/c/cyprus/s/res-e/t/promotion/sum/116/lpid/115. [2018.10.22. 최종방문]

| | 국 가 | 내 용 |
|---|---|---|
| 6 | 체코공화국[82] | • 체코공화국에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시장가격에 추가 금액을 지불하는 “Green bonus” 제도를 두고 있다. 수력 발전시설의 경우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for Competitiveness”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br>• 재생에너지 발전업자는 전력망에의 연결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
| 7 | 덴마크[83] | • 덴마크에서는 프리미엄지원제도와 순 전력량 측정제도(net metering scheme)가 운영 중에 있다. 해상풍력 발전시설에 적용되는 프리미엄지원제도를 통한 지원은 경매를 통해 이루어진다. 아울러 풍력 발전시설의 건설에 대한 대출보증이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br>• 재생에너지 전기의 전력망에의 접근은 비차별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나, 전력망의 사용에 있어서는 재생에너지 전기가 우선권을 가진다.<br>•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개의 연수 프로그램과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인증제도, 연수, 개발 및 시범(RD&D)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

82)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Czech Republic”,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czech-republic. [2018.10.22. 최종방문]

83)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Denmark”,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denmark;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denmark/summary/c/denmark/s/res-e/sum/95/lpid/96. [2018.10.22. 최종방문]

| | 국 가 | 내 용 |
|---|---|---|
| 8 | 에스토니아[84] | • 에스토니아는 프리미엄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기의 전력망에의 접근은 비차별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br>• 추가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복수 건의 투자지원제도가 운영 중에 있다. 2014-2020년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운영될 보조금 제도가 발표되었으나, 보조금 수혜조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2014-2020년 동안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공여될 보조금 총액은 약 4억 9천만 유로가 예정되어 있다. |
| 9 | 핀란드[85] | • 핀란드는 풍력・바이오매스・바이오가스 발전에 프리미엄지원제도를 운영하고,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에 보조금을 공여하고 있다. 전력망에의 접근은 비차별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재생에너지 전기에 대해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br>•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에 관한 현행 법률을 두고 대대적인 개정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2016년 11월 핀란드 정부는 '2030 국가 에너지・기후전략(National Energy and Climate Strategy for 2030)'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현행 재생에너지 지원제도를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시장조건에 맞게 지원하기 위해 풍력발전에 적용되는 현행 프리미엄지원제도를 폐지하고 경매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과도기간 동안에는 가장 비용효과적이고 경쟁적인 재생에너지 발전투자에만 보조금이 공여될 예정이다. 새로운 지원제도에 관한 법률을 두고 현재 핀란드 의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

84)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Estonia",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estonia. [2018.10.22. 최종방문]

85)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Finland",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finland. [2018.10.22. 최종방문]

| | 국 가 | 내 용 |
|---|---|---|
| 10 | 프랑스[86] | • 프랑스에서는 재생에너지 전기가 발전차액지원제도, 프리미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프리미엄지원제도에서의 지원 수준은 경매를 통해 결정된다. 또한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br>• 첫째, 재생에너지 발전업자는 전력망에 공급하는 재생에너지 전기에 대해 법정 고정요율로 지불을 보장받는다. 둘째, 일부 재생에너지 발전업자들은 시설설치비용을 충당하고 수익성을 보장받기 위해 시장가격에 일정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을 보장받는다. 셋째, 프랑스 정부는 다년간 투자계획("Programmation Pluriannuelle des Investissements PPI")에서 설정된 설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건설을 위한 입찰을 모집한다. 넷째, 재생에너지 전기의 생산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복수 건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투자하는 자에게는 세액공제(Crédit d'Impôt)가 부여되며, 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부가가치세율을 낮춰준다.[87] 한편 전력망에의 접근에 있어 재생에너지 전기에 대한 특별대우는 없다. |
| 11 | 독일[88] | • 독일은 재생에너지 전기에 대한 주된 지원수단으로서 프리미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발전시설에 대해, 시장 프리미엄 수준은 입찰제도를 통해 결정되게 된다. 그러나 100 kW 이하의 소규모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적용된다. 발전용량이 100kW 이하인 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지원자격과 수준은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Sources Act: "EEG 2017")에 규정되어 있다.<br>• 새로운 발전시설 투자를 위한 저리 대출이 독일개발은행(KfW)의 프로그램별로 제공되며, 바이오가스 발전설비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보조금이 제공된다.<br>•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전력망에의 연결(connection to the grid)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받으며, 전력망 운영자들은 전기 구매・송전시에 재생에너지 전기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

86)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France",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france. [2018.10.22. 최종방문]

87)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Promotion in France",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france/tools-list/c/france/s/res-e/t/promotion/sum/132/lpid/131. [2018.10.22. 최종방문]

88)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Germany",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ger

| | 국 가 | 내 용 |
|---|---|---|
| 12 | 그리스[89] | • 그리스에서는 2017년부터 프리미엄지원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 제도에의 참여는 입찰을 통해 가능하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15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되었으므로, 오로지 특정한 일부 경우에만 적용된다.<br>• 2016년 발전법(Development Law)에 따라, 새로운 조세제도, 보조금, 순 전력량 측정제도(net metering scheme)가 시행되고 있다.<br>• 전기의 전력망에의 접근은 비차별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재생에너지 전기에 달리 우선권이 부여되지는 않으나, 전력망의 사용에 관련해서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
| 13 | 헝가리[90] | • 헝가리는 50~500kW 발전용량의 시설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발전용량이 0.5~1MW인 시설에는, 시장 프리미엄(녹색 프리미엄)이 적용된다. 발전용량이 1MW를 초과하는 발전시설 그리고 모든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녹색 프리미엄을 받기 위해서는 입찰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단, 관련 행정명령에 의하여, 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전력망 연결은 적어도 2019년까지는 금지된다. 50kW 이하의 가구단위 발전시설은 순 전력량 측정제도(net metering scheme)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br>• 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제도가 자금지원 및 저리대출의 형태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함께 운영 중에 있다. 재생에너지 전기는 전력망에의 연결성과 접근에 우선권을 가진다. |

many;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germany/summary/c/germany/s/res-e/sum/136/lpid/135. [2018.10.22. 최종방문]

89)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Greece”,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greece. [2018.10.22. 최종방문]

90)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Hungary”,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hungary. [2018.10.22. 최종방문]

| | 국 가 | 내 용 |
|---|---|---|
| 14 | 아일랜드[91] | • 아일랜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전차액지원제도(“REFIT”)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원해왔다. 2016년 1월부터는 재생에너지에 대해 달리 지원제도가 없는 상태이나, 새로운 지원제도가 2018년 중에 도입될 예정이다.<br>• 전기의 전력망에의 접근은 비차별원칙에 따라 부여되므로 재생에너지 전기에 대해 우선권이 부여되지는 않는다.<br>• 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수, 개발 및 시범(RD&D)을 운영하고 있다. |
| 15 | 이탈리아[92] | • 이탈리아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지원이 프리미엄지원제도, 발전차액지원제도, 또는 경쟁입찰제도(tender scheme)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br>• 전력망 운영자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해 우선적 접근권을 부여해야 하며, 재생에너지 전기에 우선적으로 접근권한을 부여해야 한다.<br>•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가격기반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바이오연료에 대해서는 쿼터 제도가 운영 중이다. |

91)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Ireland”,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ireland. [2018.10.22. 최종방문]

92)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Italy”,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italy. [2018.10.22. 최종방문]

| | 국 가 | 내 용 |
|---|---|---|
| 16 | 라트비아[93] | • 라트비아에서는 쿼터제도와 경쟁입찰제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에 기초한, 복잡한 지원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출범한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며, 동 제도는 2020년 1월 1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개정을 통해 보조금을 공여받은 발전업자들에 대한 감독과 통제가 강화되고, 재생에너지 사업의 이행을 두고 보다 엄격한 단계별 기한이 도입되어 왔다.<br>• 2014년 1월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자금을 지원받은 발전업자들에게 적용될 새로운 조세 제도가 도입되었다. 2014년 1월 1일에는 재생에너지 전기의 생산과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순 전력량 측정제도(net metering scheme)가 도입되었다. '2016-2020년 에너지 개발 지침(Energy Development Guidelines 2016-2020)'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기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새로운 지원제도가 2018년 내에 개발되어야 한다.<br>• 재생에너지 전기는 전력망 접근에 있어 우선권을 가지지 않는다. |
| 17 | 리투아니아[94] | • 리투아니아는 프리미엄의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sliding)의 프리미엄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발전용량이 10kW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보장된 요율을 확보하게 된다.<br>• 재생에너지 발전업자는 보조금 및 저리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br>•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 발전시설에는 순 전력량 측정제도(net metering scheme)가 적용된다.<br>•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전력망에 우선적으로 연결할 권리를 가지며, 송전 및 배전에 있어 재생에너지 전기가 우선권을 가진다. |

93)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Latvia",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en/search-by-country/latvia. [2018.10.22. 최종방문]

94)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Lithuania",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en/search-by-country/lithuania. [2018.10.22. 최종방문]

| | 국 가 | 내 용 |
|---|---|---|
| 18 | 룩셈부르크[95] | • 룩셈부르크는 재생에너지 전기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와 프리미엄지원제도,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사인들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br>• 전력망에의 접근은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재생에너지 전기에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
| 19 | 몰타[96] | • 몰타는 발전차액지원제도와 투자지원제도를 통해 태양광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 하에서, 최대 1MWp 발전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생산하여 전력망에 공급하는 재생에너지 전기에 대해 kWh당 일정 요율이 보장된다.<br>• 재생에너지 전기에 송전 우선권이 주어진다. |
| 20 | 네덜란드[97] | • 네덜란드는 재생에너지 전기에 대해 SDE+ 프리미엄지원제도(전기의 도매가격에 프리미엄을 추가하는 방식)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기술에 대한 투자를 저리대출 및 다양한 세제혜택을 통해 지원한다(투자지원).<br>• 소규모 발전설비에는 ISDE 프리미엄지원제도와 순 전력량 측정제도(net metering scheme)가 적용된다.<br>• 해상풍력 발전에는 SDE+ 프리미엄지원제도 하에서 경쟁입찰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br>• 전력망에의 접근은 비차별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재생에너지 전기에 우선권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

95)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Luxembourg”,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en/search-by-country/luxembourg. [2018.10.22. 최종방문]

96)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Malta”,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en/search-by-country/malta. [2018.10.22. 최종방문]

97)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Promotion in Netherlands”,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en/search-by-country/netherlands/tools-list/c/netherlands/s/res-e/t/promotion/sum/172/lpid/171. [2018.10.22. 최종방문]

| | 국 가 | 내 용 |
|---|---|---|
| 21 | 노르웨이[98] | • 노르웨이는 인증서 거래제도 등 쿼터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시켜 왔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2012년 1월 1일 공동의 전력인증서 시장을 출범하였다.<br>• '전력인증법(Electricity Certificates Act)' 하에서 전기 공급자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업자들에게 할당되는 인증서를 통해 거래를 통해 확보함으로써, 자신의 전력공급량 중 일정 비율이 재생에너지 전기임을 보여야 한다. 전력망 운영자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비차별적으로 전력망에 연결시켜야 한다. |
| 22 | 폴란드[99] | • 폴란드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와 프리미엄지원제도를 운영하며, 지원수준을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해 왔다. 2016년 7월 1일 이전에 출범한 발전시설의 경우 경쟁입찰과 쿼터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전력 공급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업자에게 발급된 인증서를 일정 수량 확보해야 한다.<br>• 아울러 세금감면과 보조금, 저리대출 제도, 일부 노후발전시설에 대한 쿼터제도 등을 운영해왔다.<br>• 재생에너지 발전업자에게 전력망에의 우선적 접근권이 인정된다. |
| 23 | 포르투갈[100] | • 2012년 11월 7일까지 등록된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기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적용되었다. 그 이후에 등록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일반 도매전력시장 체제 하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보장된 요율 체계 하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발전용량에 기초해서, 경쟁입찰을 통해 지원의 수준이 결정된다. 그러나 경쟁입찰에 관한 규칙이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으며, 실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도 아직까지 없다. 따라서 2012년 11월 이후 등록된 발전시설은 첫 번째 옵션 즉 일반 도매전력시장 체제 하에서만 지원을 받고 있다.<br>• 30MW를 초과하는 발전용량을 가진 수력발전시설을 제외하고, 재생에너지 전기에 전력망에의 우선적 접근권이 인정된다. |

98)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Norway",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norway;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Promotion in Norway",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norway/tools-list/c/norway/s/res-e/t/promotion/sum/378/lpid/379. [2018.10.22. 최종방문]

99)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Poland",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poland;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poland/summary/c/poland/s/res-e/sum/176/lpid/175. [2018.10.22. 최종방문]

100)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Portugal",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

| | 국 가 | 내 용 |
|---|---|---|
| 24 | 루마니아[101] | • 루마니아에서는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쿼터제도가 운영 중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제도는 2016년 12월 31일에 폐지되었다. 2017년 3월에 루마니아 정부는 기존의 재생에너지법(No. 220/2008)을 개정하는 내용의 긴급 명령(Emergency Ordinance No.24/2017)을 발표하였다. 동 긴급명령은 기존 재생에너지법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녹색인증(Green Certificate) 지원제도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br>• 추가적으로, 2017년 4월에는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지열에너지를 통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보조제도가 도입되었다(Government Decision no. 216/2017).<br>• 2017년 루마니아 국가에너지전략에 따르면, 새로운 발전시설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 계획은 없다. |
| 25 | 슬로베니아[102] | • 재생에너지 전기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은 두 단계에 걸친 입찰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2014년 9월 22일 이후 전력망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발전시설은 슬로베니아 에너지청이 매년 실시하는 입찰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2014년 9월 22일 이전에 전력망에 연결되어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발전차액지원제도 하에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매년 결정되는 단일 가격(uniform annual price)”으로 슬로베니아 전력거래소(Borzen사)에 판매할 수 있다. 또는 프리미엄지원제도의 적용을 받을 것을 선택할 수 있다. |

portugal. [2018.10.22. 최종방문]

101)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Romania”,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romania. [2018.10.22. 최종방문]

102)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Slovenia”,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slovenia/summary/c/slovenia/s/res-e/sum/192/lpid/191. [2018.10.22. 최종방문]

| | 국 가 | 내 용 |
|---|---|---|
| 26 | 스페인[103] | • 스페인에서는 재생에너지 전기에 대한 지원이 가격규제 제도를 통해 주로 이루어져 왔다. 발전업자는 발전차액지원제도나 프리미엄지원제도(도매시장가격에 일정한 프리미엄을 추가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가격규제 제도는 2011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다. 이후 2014년 6월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지원을 목적으로 새로운 프리미엄지원제도가 도입되었다. |
| 27 | 스웨덴[104] | • 스웨덴은 쿼터제도, 조세제도, 보조금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제도는 쿼터제도로서, 인증서 거래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
| 28 | 영국[105]<br>(단, 현재 브렉시트 협상 진행 중) | • 영국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장기 발전차액보조계약(Contracts for Difference: CfD), 인증서 거래를 기반으로 한 쿼터 제도, 조세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br>• 발전차액지원제도 하에서 승인을 받은, 발전용량이 5MW 미만인 발전업자들은 가스·전력시장위원회(Gas and Electricity. Markets Authority: GEMA)가 결정한 고정 요율로 재생에너지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br>• 쿼터제도 하에서는, 발전용량이 5MW 이상인 영국 전력공급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에너지 전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공급자는 녹색 인증서를 일정 수량 확보해야 한다.<br>• 장기 발전차액보조계약(CfD) 하에서, 계약의 양 당사자인 전력공급자와 “저탄소 계약회사(Low Carbon Contracts Company: LCCC)”는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의 계약상의 고정 권리행사가격(strike price)에 합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br>• 2013년 4월에 도입된 탄소가격하한제도(Carbon Price Floor)에 따라 영국 내에서 발전에 사용되는 화석연료에 대해 새로운 과세가 이루어졌다.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우 이로부터 면제된다. |

103)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Spain”,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spain;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spain/summary/c/spain/s/res-e/sum/196/lpid/195. [2018.10.22. 최종방문]

104)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Sweden”,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sweden/summary/c/sweden/s/res-e/sum/200/lpid/199. [2018.10.22. 최종방문]

105)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United Kingdom”,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

## 제4절 소 결

첫째,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에서는 "재생에너지[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단가저감" 및 "기술추격"을,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기술 선점"을 목표로 제시하고,[106] 또한 우리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진출 지원, 무역장벽 대응 지원 등 "전방위[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107]

아직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산업경쟁력 확보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는 이행계획(안) 상에는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으나, 역내 에너지 소비 총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27% 수준까지 상향조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선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과정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나 프리미엄지원제도(FIP)와 같은 직접가격지원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제3장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캐나다, 인도 등 일부 국가들이 국제시장에서 재생에너지 발전기술을 선점하고 자국 관련 산업의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에 자국산 발전설비나 부품을 사용하도록 유인하는 국내부품사용요건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WTO협정에도 불합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복수의 WTO사건들에서 국내부품사용요건은 WTO협정 위반 판정을 받았던 전례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3장에서는 향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고려해야 할 국제통상법적 요소들을 관련 판정례와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

by-country/united-kingdom;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united-kingdom/summary/c/united-kingdom/s/res-e/sum/204/lpid/203. [2018.10.22. 최종방문]

106)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2017.12., 8면.

107) 전게문서, 10면.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제3장
#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국제통상법적 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WTO보조금협정과의 합치성 검토
제3절 GATT 및 TRIMs협정과의 합치성 검토

# 제3장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국제통상법적 분석

## 제1절 서 론

오늘날 기술 발전과 화석연료 고갈로 인해 청정에너지 확보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재생에너지가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상품의 국경간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국가들은 자국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발전 기술·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조치를 시행해 나가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재생에너지 지원조치가 국제통상법적 측면에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조치로서 발현되어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국제통상규범과 상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특히 재생에너지 지원조치의 국제통상법과의 합치성이 문제되어 온 WTO보조금협정과 GATT, TRIMs협정을 중심으로 검토한다.[108]

108) 한편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다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보조금규범에 있어 FTA당사국 양자 간에 적용될 별도의 내용을 두지 않고 보조금에 관한 다자규범 즉 WTO보조금협정을 준용해 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기 체결 FTA에서의 보조금 규정에 관해서는 달리 검토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칠레 FTA 제7.1조(반덤핑 및 상계관세 사항), 한-싱가포르 FTA 제6.3조(상계조치), 한-EFTA FTA 제2.9조(보조금 및 상계조치), 한-인도 CEPA 제2.20조, 한-EU FTA 제3.8조, 한-페루 FTA 제8.9조(반덤핑 및 상계 조치), 한-미 FTA 제10.7조(반덤핑 및 상계 관세), 한-호주 FTA 제6.8조(반덤핑 및 상계 조치), 한-캐나다 FTA 제7.7조(반덤핑 및 상계 관세), 한-중 FTA 제7.7조(일반규정), 한-뉴질랜드 FTA 제7.7조(반덤핑 및 상계 조치), 한-베트남 FTA 제7.6조(일반규정), 한-콜롬비아 FTA 제7.7조(반덤핑 및 상계 조치) 참조.

# 제2절 WTO보조금협정과의 합치성 검토

## 1. WTO보조금협정 개관

재생에너지 지원조치의 WTO보조금협정 합치성을 평가하기에 앞서, 동 협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그 전반적인 구조와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WTO보조금협정 제1조의 의미에서 "보조금"이 있는지 여부, 둘째, 만약 그러하다면, 동 협정에 불합치하는지 여부 등 두 단계의 분석이 필요하다. 첫 번째 단계로서, WTO보조금협정상 (ⅰ)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한 또는 정부의 위임 · 지시에 따라 민간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109] 또는 '소득 · 가격지지'[110]가 있고, (ⅱ) 그에 따라 '혜택'이 발생하는 경우[111] 보조금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ⅲ) 그러한 보조금의 공여가 특정 기업(군)이나 산업(군)에게만 특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112] 두 번째 단계로서, 현행 WTO보조금협정에는 (ⅰ) 수출보조금 즉 수출실적을 조건으로 보조금이 공여되는 경우, (ⅱ) 수입대체보조금 즉 수입상품보다 국내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이 공여되는 경우 등 두 가지 유형의 보조금만이 금지된다.[113] 그 외 유형의 보조금은 '금지'되지 않고 단순히 '제소가능(actionable)'할 뿐이다. 아울러 그러한 보조금은, 동 보조금을 공여받고 생산된 상품과 시장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WTO회원국의 상품에 그러한 다른 WTO회원국의 시장 내에서(실질적 피해[114]) 또는 제3국 시장에서(심각한 손상[115])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였음을 보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WTO보조금협정 위반이 된다.[116]

---

109) WTO보조금협정 제1조 제1항 (a)호 (1)목의 (ⅰ)-(ⅳ).

110) WTO보조금협정 제1조 제1항 (a)호 (2)목.

111) WTO보조금협정 제1조 제1항 (b)호.

112) WTO보조금협정 제1조 제2항 및 제2조.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 기업 · 산업 · 지역에 대한 법률상 특정성과 사실상의 특정성에 관해 제2조 제1항 (a)호와 제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113) WTO보조금협정 제3조.

114) WTO보조금협정 제5조 (a)항.

115) WTO보조금협정 제5조 (c)항.

116)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제소국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입장을 부담해야 한다. Ilaria Espa, Gracia Marín Durán, *supra* note 10, p. 633.

**[그림2] WTO보조금협정상 보조금에 대한 규제 흐름도**

**1단계: WTO보조금협정의 적용 가부**

| **WTO보조금협정의 의미에서 '보조금(subsidy)'인지** | + | **특정성(specificity)** |
|---|---|---|
| ①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br>② 그로 인한 혜택(benefit)이 발생 | | 특정 기업이나 산업 또는 기업군이나 산업군에 대해 특정적인지 여부 |

↓

**2단계: WTO보조금협정상 어떠한 보조금 유형에 해당되는지**

| **금지보조금**<br>(Prohibited Subsidies) | **조치가능보조금**<br>(Actionable Subsidies) | **허용보조금**<br>(Non-Actionable Subsidies) |
|---|---|---|
| ① 수출보조금<br>② 수입대체보조금<br>(국내부품사용요건) | 금지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모든 보조금 공여의 경우 | |

↓

**3단계: 그러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생산된 수출국 상품이 수입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수입국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 **금지보조금** 공여의 경우 | | **조치가능보조금** 공여의 경우 | |
|---|---|---|---|
| ① 다자적 접근법: WTO제소 | ② 일방적 접근법: 상계관세 부과 | ① 다자적 접근법: WTO제소 | ② 일방적 접근법: 상계관세 부과 |
| 조치가능보조금과는 달리, 금지보조금은 그 자체로서 WTO협정상 금지되므로 피해 등을 달리 입증할 필요가 없음 | 수입국 조사당국은 자국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음을 보이고<br>+<br>보조금을 받은 수입상품으로 인해 그러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인과관계)을 보여야 | 제소국(수입국 조사당국)은 수출국의 보조금 공여로 인한 '부정적 효과' 즉 ⓐ 피해, ⓑ 무효화 또는 침해, 또는 ⓒ 심각한 손상이 있다는 점을 보여야 | 수입국 조사당국은 자국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음을 보이고<br>+<br>보조금을 받은 수입상품으로 인해 그러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인과관계)을 보여야 |

※ 출처: 필자 작성

## 2. 논의의 전제

이하에서는 보조금 교부대상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보조금이 (ⅰ)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이 '전기' 자체에 대해 교부되는 경우와 (ⅱ) 재생에너지 발전에 사용되는 '설비'나 '부품' 즉 재생에너지 발전에 관련된 상품에 교부되는 경우로 나누어, 아울러 (ⅰ) 정부지원의 조건으로 국내부품사용요건(local content requirements: LCRs)과 같은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ⅱ)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재생에너지 지원조치의 국제통상법적 합치성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지원조치의 세부 유형과 그 내용에 따라 WTO협정 하에서 상이한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1) 정부지원대상으로서의 '재생에너지전기'와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구분

보조금을 제공받아 생산된 상품이 (ⅰ) '재생에너지전기'인지, 아니면 (ⅱ) 재생에너지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 발전'설비'나 '부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WTO협정과의 합치성 검토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바뀔 수 있다. WTO보조금협정은 지원조치가 무역을 왜곡시키는 보조금에 대해서만 규율하기 때문이다. 즉 정부지원조치가 WTO보조금협정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공여한 WTO회원국과 다른 WTO회원국 사이에 해당 보조금을 제공받아 생산한 상품의 교역 또는 그러한 교역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국가간 교역이 없는 경우, 무역왜곡효과가 실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기의 특성상 전력의 국경간 거래에는 지역적 근접성이라는 제약을 붙는다. 아울러 전력망을 연결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국경간 전력거래의 당사자들 사이에 마련되어 있는지도 중요하다. 따라서 전력시장은 '지역적인' 성격을 가진다.[117] 이러한 점은 이후 살펴

117) 육상 · 해상 · 항공 경로를 통해 운송이 가능한 대부분의 제조상품의 경우와는 달리, 전기는 여전히 저장이 어렵고 높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국경간 전력거래는 이미 시장통합이 상당 수준 이루어져 있는 인접국들 사이에서 대부분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역내 전력시장의 경우, 유럽연합 28개국 차원의 전력 순 수입량은 제3차 에너지 패키지(Third Energy Package)에도 불구하고, 2015년 기준 최종소비자 전력소

볼 바와 같이 재생에너지 정부지원조치의 WTO협정 합치성을 논의하는 데에도 중요한 전제가 된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전기' 정부지원에 대해서는 제소국 입장에서 무역왜곡효과를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118] 반면 태양광패널 및 모듈, 풍력터빈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발전부품을 주된 국경간 교역대상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발전기술 부문의 경우 '하나의' '전지구적' 시장을 두고 있다.

### (2) 재생에너지 지원제도 내에 국내부품사용요건의 포함 여부

재생에너지 정부지원의 조건으로 국내부품사용요건이 지원제도 내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WTO보조금협정과의 합치성 검토에 또한 중요하다. 첫째, 재생에너지 정부지원제도에 국내부품사용요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즉 정부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으로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설비의 제조 및 건설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국산부품을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는 일종의 '산업정책' 수단으로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조치를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에 가깝다.[119] 이후 살펴볼 바와 같이, 국내부품사용요건이 그 차별적 효과로 인해 WTO협

---

비총량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미국의 경우 2014년을 기준으로 전력 총소비량의 1.6%만을 수입하였다. 배전계통에 있어서의 이러한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재생에너지전기에 대한 정부지원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도 일정 부분 제한적이다. 이러한 특성은 WTO보조금협정 하에서 재생에너지 지원과 관련하여 각국이 가지는 정책공간의 문제에도 관련성을 가진다. Ilaria Espa, Gracia Marín Durán, *supra* note 10, p. 626; Spyros Chatzivasileiadis and Damien Ernst, "The State of Play in Cross-Border Electricity Trade and the Challenges towards a Global Electricity Market Environment", in Thomas Cottier and Ilaria Espa (eds), *International Trade in Sustainable Electricity: Regulatory Challenges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p. 38-42.

118) 예를 들어, 전세계 전력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2015년을 기준으로 726TWh로서 전세계 총 전력소비량(20,200TWh)의 3.5%에 불과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IEA, *Electricity Information: Overview*, 2017, pp. 5, 7-8, available at: https://www.iea.org/publications/freepublications/publication/ElectricityInformation2017Overview.pdf. [2018.10.22. 최종방문]
한편 OECD국가들 사이의 전력수입총량은 OECD 최종 전력소비량의 약 4.4%(488TWh)였고 이 중 대부분의 교역이 유럽연합의 통합된 단일 전력시장 내에서 유럽연합 국가들 사이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비OECD국가들 사이에서는 전력수입총량이 비OECD국가들 최종 전력소비량의 2.2%(238TWh)를 기록하였다. Ilaria Espa, Gracia Marín Durán, *supra* note 10, p. 626.

119) Sadeq Z. Bigdeli, "Clash of Rationalities: Revisiting the Trade and Environment Debate in Light of WTO Disputes over Green Industrial Policy", *6(1) Trade, Law and Development*, 2014, pp. 205-208; Mark Wu, James Salzman, "The Next Generation of Trade and Environment Conflicts: The Rise of Green Energy Policy", *108(2) Northwestern*

정에 불합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이미 분명해진 상태이다.

둘째, 국내산업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즉 기후친화적인 에너지원을 사용할 것을 장려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전기,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부품의 제조업자에게 보조금이 비차별적으로 공여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발전설비 및 부품의 제조업자를 지원할 경우 새로운 시장진입자들이 청정에너지 기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조하고, 재생에너지 기술에 있어 기술 혁신과 비용 절감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적 편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120] 이러한 유형의 정부지원은 그 자체로서 차별적이지는 않을 수 있으나 사실상 국내 제조업자들이 전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실제로, 보조금을 공여하고 있는 국가 내에서 외국기업의 동종 수입상품의 시장경쟁력은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다.[121]

## 3. 1단계: WTO보조금협정의 적용 가부

WTO 보조금협정의 규율대상인 '보조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가 있고 이에 따라 수혜기업에게 '혜택(benefit)'이 발생해야 한다.[122] 그리고 보조금이 동 협정의 실질적 규율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기업(군) 또는 산업(군)에게만 '특정적(specific)'으로 공여되어야 한다.[123]

### (1)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

WTO회원국의 지원조치가 WTO보조금협정상 "보조금(subsidy)"으로서 동 협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요건으로서,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가 있거나,[124] 민간기관이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지시를

---

*University Law Review*, 2014, pp. 422-426; Ilaria Espa, Gracia Marín Durán, *supra* note 10, pp. 626-627.

120) Ilaria Espa, Gracia Marín Durán, *supra* note 10, p. 627.

121)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UNEP, *supra* note 24, p. 105.

122) WTO보조금협정 제1조 제1항.

123) WTO보조금협정 제1조 제2항 및 제2조.

124) WTO보조금협정 제1조 제1항 (a)호 (1)목의 (ⅰ)~(ⅲ).

받아 그러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125] 또는 소득·가격지지(income or price support)가 있어야 한다.[126]

WTO보조금협정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의 유형으로서 (ⅰ)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의 직접이전(무상지원, 대출 및 지분참여 등), 잠재적인 자금 또는 채무부담의 직접이전(대출보증), (ⅱ)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않는 경우(세액공제 등), (ⅲ) 정부가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 이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ⅳ) 정부가 민간기관으로 하여금 상기 (ⅰ)~(ⅲ) 번의 행위를 대신 행하도록 위임하거나 지시하는 경우를 망라적으로[127]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기여 유형에 따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지원도 (ⅰ) 재생에너지 소비와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세액 감면·공제 등의 재정조치, (ⅱ) 재생에너지 기술의 설치·활용에 요구되는 자본비용을 줄이기 위한, 자금지원·R&D지원 등의 투자지원조치, (ⅲ) 청정에너지 발전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전력 한 단위당 일정 최저가격을, 또는 도매 전기시작가격에 더하여 일정한 할증료를 보장함으로써 재생에너지전기 발전량과 관련 발전설비의 사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가격지지제도 등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이들 조치 모두 재정적 기여 요건을 충족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128]

### (2) 그로 인한 혜택의 발생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 또는 소득·가격지지로 인해 혜택(benefit)이 발생해야 한다.[129] 혜택의 유무 판단에는 "시장기준(market benchmark)" 테스트가 다수설[130]

125) WTO보조금협정 제1조 제1항 (a)호 (1)목의 (ⅳ).

126) WTO보조금협정 제1조 제1항 (a)호 (2)목.

127) Panel Report, *US - Export Restraints*, paras. 8.65, 8.73.

128) WTO and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Trade and Climate Change - WTO/UNEP Report*, 2009, pp. 114-117; Ilaria Espa, Gracia Marín Durán, *supra* note 10, p. 625.

129) WTO보조금협정 제1조 제1항 (b)호.

130) *See*, e.g., Peter Van den Bossche, Werner Zdouc, *The Law and Policy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ext Cases and Materials*, 3r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 762; Mitsuo Matsushita, Thomas J. Schoenbaum, Petros C. Mavroidi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Law, Practice, and Policy*, 2nd ed., Oxford

과 판례[131]의 입장이다. 따라서 혜택의 유무는 관련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조건에 비추어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132] 단, 혜택분석을 위한 '관련시장'이 무엇인지의 문제를 두고 2013년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사건 상소기관 판정 이후에도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1) 재생에너지 '전기'에 대한 정부지원의 경우

앞서 [표2]에서 확인한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사건은 지금까지 발전차액지원제도의 WTO보조금협정과의 합치성 여부가 다루어진 유일한 사례이다. 이 사건 당시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태양광발전 및 풍력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에 대해 온타리오주전력청(OPA)이 20년간 일정한 매입가격을 보장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단, 그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업자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온타리오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발전부품(즉 온타리오주에서 생산된 태양광패널과 풍력터빈)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했다.[133] 제소국인 유럽연합과 일본은 동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부속되어 있는 국내부품사용요건을 두고 WTO에 소를 제기하였다.[134]

제소국들은 국내부품사용요건이 GATT 제III조 제4항 및 TRIMs협정 제2조 제1항의 내국민대우 위반이며, WTO보조금협정 제3조 제1항 (b)호 및 제3조 제2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WTO보조금협정 제3조는 수입상품 대신 국내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공여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

University Press, 2006, pp. 347-352; Petros C. Mavroidis, George A. Bermann, Mark Wu, *The Law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Documents, Cases and Analysis*, West, 2010, pp. 571-575; Petros C. Mavroidis, Patrick A. Messerlin, Jasper M. Wauters, *The Law and Economics of Contingent Protection in the WTO*, Edward Elgar, 2008, p. 324.

131) *See*, e.g., Panel Report, *Canada - Aircraft*, para. 9.112; Appellate Body Report, *Canada - Aircraft*, para. 157; Panel Report, *US - Lead and Bismuth II*, para. 6.66; Panel Report, *Canada - Aircraft Credits and Guarantees*, paras. 7.67, 7.144; Panel Report, *EC - DRAMs*, para. 7.176; Panel Report, *Japan - DRAMs (Korea)*, para. 7.256.

132) WTO보조금협정 제14조. *See* also Appellate Body Report, *Canada - Aircraft*, para. 157.

133) Appellate Body Report,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paras. 4.17, 4.21-4.22.

134) *Ibid*., paras. 1.4-1.7.

그러나 이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문제된 온타리오주의 발전차액지원제도는 WTO보조금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정을 내렸다. 상소기관은 문제된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온타리오 주 정부에 의한 "상품[의] 구매"라 볼 수 있으므로 재정적 기여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135] 그러나 상소기관은 혜택분석에 관해 패널이 내린 판정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상소기관은 혜택분석을 위한 '관련 시장(relevant market)'이 무엇인지에 특히 주목하였다. 패널이 관련시장을 "[시장]경쟁적인 전기도매시장 전체(competitive wholesale electricity market as a whole)"[136]로 본 것에 법적 오류가 있다고 보면서, 상소기관은 이 사건에서 관련시장은 "[온타리오] 정부의 에너지믹스 결정에 따라 창설된,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전기를 위한 경쟁시장"이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137] 관련시장의 결정은 단순히 '수요' 측면의 대체가능성만을 근거로 할 수 없으며 '공급' 측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138]

상소기관에 따르면,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되었는지 아니면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되었는지 그 발전방식에 상관없이 전기는 모두 물리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요 측면에서는 화석연료 전기와 재생에너지 전기 사이에 대체가능성이 높으며 관련시장을 모든 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된 전기가 매매되는 하나의 전기시장으로 보는 방향으로 판단이 기울게 된다고 보았다.[139] 그러면서도 상소기관은 "풍력 및 태양광 발전업자들이 비용구조와 운영비용의 차이 때문에 다른 유형의 발전업자들과는 경쟁할 수 없"으며, 그러한 비용의 차이가 상당하므로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전기는 오로지 정부규제를 통해서만(only ... as a matter of government regulation) 생산이 가능하다"[140]고 지적하면서,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공급 측면의 고려요소들이 수요 측면보다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135) *Ibid*., para. 5.128.
136) *Ibid*., para. 5.178.
137) *Ibid*., para. 5.178.
138) *Ibid*., paras. 5.171 - 5.172.
139) *Ibid*., para. 5.178.
140) *Ibid*., paras. 5.174 - 5.175.

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풍력 및 태양광발전 전기가 온타리오 주 정부의 에너지믹스 결정으로 인해 생산될 수 있었던 것은 맞으나, 해당 정부가 결정한 특정 에너지믹스가 "그 자체로서(in and of itself)" WTO보조금협정상 혜택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141] 혜택분석에 있어서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업자가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없었을 경우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전기 시장에 진입하였을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이지 동 발전업자가 전체 전기도매시장에 진입하였을 것인지 여부가 아니다.[142] 이러한 이유에서 상소기관은 혜택 유무에 관한 패널 판정을 파기하였다. 다만, 패널심 단계에서 충분한 사실관계가 확보되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이 혜택분석을 완료할 수 없다고 하였다.[143]

이처럼 상소기관은 혜택분석을 위한 시설비교기준(즉 관련시장)의 범위를 '화석연료,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에 상관없이 모든 생산유형의 전기가 경쟁하는 단일의 시장'으로 보지 않고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전기 시장'으로 좁게 해석하였다. 관련시장의 범위가 좁아질수록 혜택분석 비교대상이 되는 시장의 범위가 좁아지게 되는 것이므로, 제소국 입장에서 혜택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문제된 조치가 WTO보조금협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도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반대로, '경쟁적인 도매전력시장 전체'을 관련시장으로 볼 경우 온타리오주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혜택을 발생시켰다는 점이 쉽게 입증될 수 있었을 것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인해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전기의 매입가격이 온타리오주 전기시장에서의 전기 도매가격보다 높았기 때문이다.[144]

그러나 재생에너지 전기에 대한 정부지원이 모든 경우에 WTO보조금협정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는 단정지을 수 없으며, 재생에너지 정부지원의 WTO보조

141) *Ibid*., para. 5.175: "[...] the definition of a certain supply-mix by the government cannot in and of itself be considered as conferring a benefit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1(b) of the SCM Agreement." [밑줄첨가]

142) *Ibid*., para. 5.199.

143) *Ibid*., para. 5.244.

144) 따라서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시에 제소국이 WTO보조금협정에 따라 혜택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보다 어려워졌으며,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 정부지원이 WTO보조금협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로는 다음을 참조. Gracia Marín Durán, "Sheltering Government Support to 'Green' Electricity: the European Union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67(1)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2018, p. 143.

금협정 합치성이 문제될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부족으로 혜택 유무에 대한 검토를 상소기관이 완료하지 못하여 동 제도에 WTO보조금협정이 적용되지 못하였던 것이지,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인해 발생한 혜택이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상소기관은 재생에너지 전기에 대한 정부지원조치가 일정한 부분적 적용배제를 통해 WTO보조금협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지,[145] 해당 조치가 WTO보조금협정의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전면적으로 제외된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146]

### 2)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 부품'에 대한 정부지원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 부품'에 대한 정부지원의 경우, 재정적 기여로 인한 혜택분석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며 관련시장 및 시설비교기준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크게 논란이 예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조업체에게 자금을 지원[147]할 경우, 해당 제조업체를 재정적 기여가 없었을 경우보다 유리한 조건("better off")에 놓이게 할 것이고, 시장에서 보조금의 수혜자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조건("on terms more favourable")으로 그러한 자금지원이 제공될 것이다.[148]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조

145) 위 상소기관 판정이 국가들의 정책재량을 위해 WTO보조금협정으로부터 일정한 '적용배제(carve-out)'를 허용한 것이라는 입장으로는 다음을 참조. Aaron Cosbey, Petros C. Mavroidis, "A Turquoise Mess: Green Subsidies, Blue Industrial Policy and Renewable Energy - the Case for Re-drafting the Subsidies Agreement of the WTO", *17(1)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2014, pp. 28-29; Gracia Marín Durán, *supra* note 144, p. 144; Aaron Cosbey, Luca Rubi, "Does it FIT? An Assessment of the Effectiveness of Renewable Energy Measures and of the Implications of the Canada - Disputes", *E15 Initiative*, 2013, pp. 4-8.

146) Ilaria Espa, Gracia Marín Durán, *supra* note 10, p. 634.

147) WTO보조금협정 제1조 제1항 (a)호 (1)목의 ( i ).

148) Appellate Body Report, *Canada - Measures Affecting the Export of Civilian Aircraft*, WT/DS70/AB/R, adopted 19 November 1999, para. 157: 'We also believe that the word "benefit", as used in Article 1.1(b), implies some kind of comparison. This must be so, for there can be no "benefit" to the recipient unless the "financial contribution" makes the recipient "better off" than it would otherwise have been, absent that contribution. In our view, the marketplace provides an appropriate basis for comparison in determining whether a "benefit" has been "conferred", because the trade-distorting potential of a "financial contribution" can be identified by determining whether the recipient has received a "financial contribution" on terms more favourable than those available to the recipient in the market.' [밑줄첨가]

업체에게 시장조건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출해 줄 경우[149] 해당 업체가 금융시장에서 실제로 조달할 수 있는 비교가능한 상업적 차입보다 더 유리한 조건[150]으로 자금을 확보하게 되므로[151] 그로 인해 혜택이 발생하였음을 보이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보조금 공여는 바로 아래에서 검토할 바와 같이 재생에너지 산업 등 일정 기업(군)이나 산업(군)에만 특정적으로 부여될 경우, 해당 보조금은 특정적(specific)인 보조금으로서 WTO보조금협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152]

### (3) 기업(군)·산업(군)에 대한 특정성[153]

#### 1) WTO보조금협정 제2조의 구조

WTO보조금협정 제2조에 따른 특정성 테스트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진다. 즉 (ⅰ) 제2조 제1항에 따라 특정성 여부가 결정되는 대부분의 경우와 (ⅱ) 보조금이 특정 지역에 위치한 기업에만 공여되는 경우에 특정성 판단을 간소화하기 위해 규정한 제2조 제2항 지역특정성 특칙이 있다.

##### 가. 제2조 제1항: 일반원칙

제2조 제1항은 특정성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동 항에서의 특정성 검토는 첫째,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제2조의 기업(군) 또는 산업(군)을 구성하는지, 둘째, 보조금

149) WTO보조금협정 제1조 제1항 (a)호 (1)목의 (ⅰ).

150) 예를 들어 보다 저리의 이자율, 보다 긴 상환기간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151) WTO보조금협정 제14조 제(b)항. 한편 정부에 의한 대출보증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혜택산정 기준이 적용된다. WTO보조금협정 제14조 제(c)항.

152) 이러한 점에서, 현재 소송계속 중인 US - Renewable Energy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재정 및 금융 인센티브 공여는 WTO보조금협정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소국 인도가 주장하고 있을 수입 부품과 기술 대신 국내 부품과 기술을 사용할 것으로 그러한 인센티브의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패널이 판단할 경우, 문제된 조치는 WTO보조금협정 제3조 제1항 (b)항 위반 판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Ilaria Espa, Gracia Marín Durán, *supra* note 10, p. 640.

153) WTO보조금협정 제2조 특정성에 관한 이하의 내용은 다음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정리·보충하였음. 이천기,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지원사업에의 WTO 보조금협정 적용가능성 연구 -'지역특정성' 등 특정성 요건을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4, 104면.

교부가 법률상 특정적이거나, 객관적인 보조금 수혜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사실상 특정성이 없는지 등 2단계 테스트로 이루어진다.

### ① 1단계: 보조금의 교부대상

WTO보조금협정 제2조 1항의 두문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으로서 (ⅰ) 하나의 기업(an enterprise), (ⅱ) 기업군(group of enterprises), (ⅲ) 하나의 산업(an industry), (ⅳ) 산업군(group of industries) 등 네 가지 경우를 규정하며[154] (ⅰ)과 (ⅱ)의 경우를 기업특정성, (ⅲ)과 (ⅳ)의 경우를 산업특정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155] 기업특정성의 경우 보조금의 수혜자는 오로지 특정 기업이거나 기업군이므로, 특정성 유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산업특정성의 경우, 특히 "산업군" 개념을 어느 수준까지 광의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 왔다.[156]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표7] WTO보조금협정 제2조 "산업" 및 "산업군"의 범위**

| | | |
|---|---|---|
| 1 | US - Softwood Lumber IV (패널) | • '산업'이란 상품의 생산자에 관련된 개념이므로, '산업' 또는 '산업군'이란 일반적으로 '[생산자가] 생산하는 상품의 유형을 기준으로 (by the type of products they produce)' 결정됨[157]<br>• 산업(군)이 판매하는 '최종상품'을 기준으로 특정성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캐나다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음.[158] |

154) 위 네 가지 경우를 통틀어 "특정 기업(certain enterprises)"으로 칭하고 있다.

155) Rüdiger Wolfrum, Peter-Tobias Stoll, Michael Koebele, *WTO - Trade Remedies, Brill Academic Pub*, 2007, p. 457; Peter Van den Bossche, Werner Zdouc, *supra* note 130, p. 764.

156) 예를 들어, 어느 정도로 '동종'인 내지는 '유사한' 상품들을 생산하는 산업들이 하나의 "산업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천기, 앞의 주153, 105면 참조.

157) Panel Report, *US - Softwood Lumber IV*, para. 7.120.

158) 이 사건에서 캐나다는 자신의 연목제조업자들이 200개 이상의 다양한 연목상품들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23개의 산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캐나다는 23개 산업을 한 '산업군'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것이며 따라서 캐나다가 자신의 연목제조업자들에게 공여한 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다고 보기에 지나치게 광범한 대상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Panel Report, *US - Softwood Lumber IV*, para. 7.117. 그러나 패널은 이러한 캐나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어떠한 한 산업(예를 들어, 철강, 자동차, 섬유산업 등)이 다양한 종류의 철강, 자동차, 섬유상품을 생산하는 경우라 해도 이는 보조금협정 제2조 1항의 의미에서 '산업' 또는 '산업군'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Ibid*., para. 7.120.

| | | |
|---|---|---|
| | | • 특정성은 상품 차원이 아니라 산업 차원에서 결정되므로, 최종상품별로 특정성 분석은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봄.159)<br>• 그럼에도, 산업군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산업들이 "충분히 유사한 상품(sufficiently similar products)"을 생산하고 있어야 한다고 봄.160)<br>• 이 사건에서 미국 조사당국이 캐나다의 목재제품 산업군을 보조금협정의 의미에서 "산업군"으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결론지음 |
| 2 | US - Upland Cotton (패널) | • 제2조 두문의 목적상 "산업" 또는 "산업군"은 일반적으로 생산자가 생산하는 상품유형을 기준으로 결정됨.<br>• "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 사건마다 주어진 다양한 요소에 근거하여 결정됨.<br>• 제2조 1항에 "특정 기업"이라는 일반적인 용어가 사용된 것은, 특정성이 "엄격한 정량적 정의(rigid quantitative definition)"에 따라 결정될 수 없음을 의미함.161) |
| 3 | US - AD/CVD (China) (상소기관) | • "특정 기업"에서 "특정"이란 "알려지고 특정지어진, 그러나 명시적으로 식별되지는 않은"의 의미임.<br>• "군(group)"이란 "어떠한 상호적인 또는 공통의 관계 또는 목적에 근거하여 단일체 또는 전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또는 어느 정도의 유사성 때문에 하나로 분류되는 다수의 사람 또는 사물"을 의미함.<br>• "산업"의 의미에 대해서는 US - Upland Cotton 사건 패널 판단에 동의함.<br>• "특정 기업" 개념에 명확한 범위가 기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범위는 개별 사건마다 결정되어야 함162) |

※ 출처: 이천기, 앞의 주153, 105-106면을 중심으로 정리함.

159) Panel Report, *US - Softwood Lumber IV*, paras. 7.120-7.121.

160) Panel Report, *US - Softwood Lumber IV*, fn. 188.

161) Panel Report, *US - Upland Cotton*, para. 7.1142.

162) Appellate Body Report, *US - AD/CVD (China)*, para. 373.

### ② 2단계: 특정성의 판단기준

WTO보조금협정 제2조 제1항에서는 (ⅰ) 법률상 특정성((a)호),[163] (ⅱ) 객관적인 보조금 수혜기준 유무((b)호),[164] (ⅲ) 사실상 특정성((c)호)[165] 등 세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특정성을 판단하게 된다. 제2조 제1항 (a)호 내지 (c)호 중 한 기준만에 근거한 특정성 판단은 결정적이지 못할 수 있으며,[166] (a)호 내지 (c)호가 주어진 법률과 사실관계에 "동시적으로 적용(concurrent application)"되어야 한다.[167]

**[표8] WTO보조금협정 제2조에 따른 특정성의 판단기준**

| | | |
|---|---|---|
| 1 | **법률상 특정성** (제2조 제1항 (a)호) | • 보조금 공여의 근거 법률이 보조금 수혜조건을 특정 기업으로 명백하게 한정하는 경우,[168] 특정성이 있음 |
| | US - Upland Cotton (패널) | • 근거법령상의 문언에 주목: 보조금 공여의 근거법률이 보조금 수혜대상으로서 특정 목화상품의 생산자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특정성이 있다고 봄<br>• 아울러 (ⅰ) 문제된 보조금이 농업 부문 내 특정 부분의 산업에만 공여되었다는 점, (ⅱ) 수혜산업들이 8개 정도의 세부상품만을 생산하고 있었다는 점, (ⅲ) 해당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른 농업부문과 농업상품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169] |

163) WTO보조금협정 제2조 제1항 (a)호.

164) WTO보조금협정 제2조 제1항 (b)호.

165) WTO보조금협정 제2조 제1항 (c)호.

166) Appellate Body Report, *US - AD/CVD (China)*, para. 366.

167) 상소기관은 (a)호 내지 (c)호 중 한 기준에 비추어 특정성 유무가 "명백하게(unequivocally)"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호에 근거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문제된 조치의 본질과 내용에 비추어 다른 호의 적용이 적절한 경우에는 어느 한 호에만 근거하여 특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Appellate Body Report, *US - AD/CVD (China)*, para. 371.

168) Panel Report, *US - Offset Act (Byrd Amendment)*, para. 7.109.

169) Panel Report, *US - Upland Cotton*, paras. 7.1146-7.1148, 7.1150, 7.1152.

| | | |
|---|---|---|
| | EC - Large Civil Aircraft (패널 및 상소기관) | • 패널은 US - Upland Cotton 사건 패널 입장[170]에 일부 동의하면서, 특정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특정 상품 생산자 집단'으로만 보조금 공여가 국한되어 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보조금이 경제 전반에 걸쳐 충분히 폭넓게 이용가능한지 여부라고 봄.[171]<br>• 상소기관도 패널 판단을 지지[172] |
| | US - AD/CVD (China) (상소기관) | • 법률상 특정성의 경우, '보조금이 특정 기업들에게만 공여되었는지(has been granted)'가 아니라 '보조금의 수혜가능성이 명백하게 한정되었는지(access ... explicitly limited)'가 중요한 문제임<br>• 즉 문제된 보조금을 특정 기업들이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지(eligible)'가 법률상 특정성 판단에 중요함[173] |
| | US - Large Civil Aircraft (패널 및 상소기관) | • 패널은 보조금 수혜가능성이 "명백하게 한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보조금 공여의 근거법률, 또는 공여당국이 보조금 공여 대상을 결정하는 데 근거가 되는 그 밖의 수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174]<br>• 상소기관도 패널 판단을 지지[175] |
| 2 | **객관적 수혜기준 유무** (제2조 제1항 (b)호) | • 공여당국 또는 보조금 공여의 근거법률이 보조금의 수혜조건 및 금액을 규율하는 "객관적인 기준 또는 조건(objective criteria or conditions)"을 규정하고, 보조금 수혜조건이 자동적이며 엄격히 준수되며, 검증이 가능하도록 법률, 규정 또는 공식문서에 명백하게 규정된 경우, 특정성이 없음<br>• (b)호에 따른 특정성 판단에서는 "보조금의 수혜기준 또는 조건이 규정되고 준수되는 방식(the manner in which the criteria or conditions of eligibility are prescribed and adhered to)"이 중요함 |

170) US - Upland Cotton 사건 패널은 WTO보조금협정 제2조 제1항의 법률상 특정성은 보조금이 "제한된 특정 제품들을 생산하는 특정 생산자 집단에게만 혜택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충분히 폭넓게 이용가능한지(sufficiently broadly available throughout an economy as not to benefit a particular limited group of producers of certain products)"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Panel Report, *US - Upland Cotton*, para. 7.1142.

171) Panel Report, *EC - Large Civil Aircraft*, para. 7.919.

172) Appellate Body Report, *EC - Large Civil Aircraft*, para. 949.

173) Appellate Body Report, *US - AD/CVD (China)*, para. 368.

174) Panel Report, *US - Large Civil Aircraft (2nd Complaint)*, para. 949.

175) Appellate Body Report, *US - Large Civil Aircraft (2nd Complaint)*, para. 753.

| | | |
|---|---|---|
| 3 | **사실상 특정성** (제2조 제1항 (c)호) | • 위 (a)호와 (b)호에 비추어 외견상 '비특정적'이라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조금이 '사실상' 특정적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밖의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음<br>• 예: (ⅰ) 한정된 특정 기업들만에 의해 보조금제도가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ⅱ) 특정 기업에 의해서만 보조금 계획이 압도적으로 사용(predominant use)되고 있는지 여부, (ⅲ) 특정 기업에게 불균형적으로 많은(disproportionately large)[176] 금액의 보조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ⅳ) 보조금 지급 결정에 있어서 공여기관의 재량권 행사방식에 특정성이 있는지 여부 등((c)호 2문) |

※ 출처: 이천기, 앞의 주153, 106-108면을 중심으로 정리함.

### 나. 제2조 제2항: 지역특정성

제2조 2항은 지역특정성(regional specificity)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177] 즉 "공여당국의 관할지역 중 지정된 지역 내에 위치하는 특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은 특정적이다.

지역특정성 판단에 중요한 부분은 '공여당국의 관할지역 내 포함되어 있는 여러 지역들 중에서 특정 지정지역에만 보조금이 공여'된다는 부분이지, 그러한 '지정지역 내에 위치한 여러 기업들 중 특정 기업들'에게만 보조금이 공여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178] 그리고 "지정된 지역"이라 함은 반드시 공식적인 행정·경제 구역만을 의미하는

176) EC - Large Civil Aircraft 사건 패널은 "불균형적(disproportionate)"이란 '균형을 잃은(lacking proportion)'의 의미로서, 보조금의 금액과 그 밖의 무언가 전체의 금액(something else that is "a whole") 사이의 관계가 보조금 금액이 '균형적'이기 위해 필요한 금액보다 큰 금액인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그러한 보조금 공여의 근거가 된 보조금 프로그램은 불균형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는 데 기준(baseline) 내지는 참고자료(reference data)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Panel Report, *EC - Large Civil Aircraft*, paras. 7.961, 7.964.

177) 제2조 제2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subsidy which is limited to certain enterprises located within a designated geographical region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granting authority shall be specific. It is understood that the setting or change of generally applicable tax rates by all levels of government entitled to do so shall not be deemed to be a specific subsidy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178) 예를 들어 EC - Large Civil Aircraft 사건에서 유럽공동체는 제2조 제2항 지역특정성이 "이중 기준(double basis)" 즉 2단계 테스트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 보조금 공여가 (ⅰ) '공여당국의 관할지역 중 지정된 지역 내에 위치'한 (ⅱ) '기업들 중 일부 기업들'에게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역특정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제소국 미국에 입장에 동의하며, 위 (ⅰ)번만을 충족할 경우 지역특정성이 긍정된다고 판단하였다. Panel Report, *EC - Large Civil Aircraft*, para. 7.1223. 이후 US - AD/CVD (China) 사건 패널도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Panel Report, *US - AD/CVD (China)*, para. 9.135.

것은 아니며, "식별된 모든 영역(any identified tract of land)"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179] 따라서 예를 들어, (ⅰ) 보조금이 A국의 국고로부터 지급되며, A국 내에 위치한 B특별시 내에 위치한 기업들[180]에만 지급될 경우, (ⅱ) 보조금이 B특별시 자체재원으로부터 지급되며, B특별시의 C동에 위치한 기업들[181]에게만 지급될 경우, 제2조 제1항에 따른 특정성 판단기준을 검토할 필요 없이 제2조 제2항에 따라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ⅲ) 보조금이 A국의 국고로부터 지급되며, B특별시 뿐 아니라 A국 내 다른 행정구역의 기업들에게도 교부되는 경우, (ⅳ) B특별시의 지방보조금이 C동 뿐 아니라 B특별시 내 다른 동에 위치한 기업들에게도 교부되는 경우라면 지역특정성은 인정될 수 없다. 한편 (ⅴ) 하나의 지방보조금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이 공동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권한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달리 입증되지 않는 이상 해당 보조금 교부는 중앙정부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지역특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182]

#### 2) 재생에너지 정부지원의 특정성 유무

##### 가. 재생에너지 '전기'에 대한 정부지원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 산업은 전체 에너지시장의 일부이다. 따라서 보조금이 재생에너지원 전반을 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태양광, 풍력 등 특정 재생에너지원을 지원대상으로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2조 제1항의 특정성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183] 보통 재생에너지의 생산 · 유통 · 소비 등에 관해 다루는 특정 법률 내에 보조금 교부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2조 제1항 (a)호에 따라 법률상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

179) Panel Report, *US - AD/CVD (China)*, para. 9.144.

180) 바로 위에서 확인하였듯이, 국고보조금이 B특별시에 위치한 '모든' 기업들에게 공여되는지 아니면 그 중 '일부' 기업들에게만 공여되는지는 제2조 제2항 지역특정성 판단에는 관련이 없다.

181) 이 경우에도, B특별시의 지방보조금이 C동에 위치한 '모든' 기업들에게 공여되는지 아니면 그 중 '일부' 기업들에게만 공여되는지는 제2조 제2항 지역특정성 판단에는 관련이 없다.

182) 이천기, 앞의 주153, 114면. *See* also Rüdiger Wolfrum, Peter-Tobias Stoll, Michael Koebele, *supra* note 155, p. 467.

183) *See*, e.g., Ilaria Espa, Gracia Marín Durán, *supra* note 10, p. 637; Aaron Cosbey, Petros C. Mavroidis, *supra* note 145, pp. 28-29; Luca Rubi, "Ain't Wastin Time No More: Subsidies for Renewable Energy, the SCM Agreement, Policy Space and Law Reform", *15(2)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2012, pp. 547-549.

성이 높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그 밖의 에너지원에도 보조금 교부가 가능하다고 근거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상 특정성은 부인되더라도, 해당 근거법률 하에서 '사실상' 내지는 '대부분의 경우' 재생에너지 산업만이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제2조 제1항 (c)호에 따라 사실상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

아울러 보조금 공여당국이 자신의 관할지역 내 특정 지역의 재생에너지 생산·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지역 내에 위치한 기업들에게만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제2조 제2항 지역특정성에 해당됨을 앞서 확인하였다.

**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부품'에 대한 정부지원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나 부품에 대한 정부지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ⅰ) 대다수 경우가 그러하듯 화력 등 다양한 유형의 발전설비·부품 등은 배제한 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부품에만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ⅱ) '일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부품은 배제하고 '다른 일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부품에만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특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 4. 2단계: WTO보조금협정상 어떠한 보조금 유형에 해당되는지

WTO보조금협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의 유형은 원래 (ⅰ) 금지보조금, (ⅱ) 제소가능보조금, (ⅲ) 허용보조금 등 세 가지가 있었다. 그러나 허용보조금 개념은 2000년 1월 1일부로 협정상 효력을 다하였다. 따라서 지금은 WTO보조금협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보조금은 금지보조금 아니면 제소가능보조금에 해당된다.

첫째, WTO보조금협정에서는 (ⅰ) 수출보조금이 공여된 경우[184]와 (ⅱ) 수입대체보조금 즉 국내부품사용요건을 조건으로 하여 보조금이 교부된 경우[185] 무역왜곡효과가 있다고 간주되며, 사용이 "금지"된다.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사건을 예로

184) WTO보조금협정 제3조 제1항 (a)호.
185) WTO보조금협정 제3조 제1항 (b)호.

들자면, 만약 온타리오 주의 발전차액지원제도가 WTO보조금협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이라고 판정이 내려졌더라면, 동 제도는 국내부품사용요건을 포함하고 있는 수입대체보조금을 구성하였을 것이므로[186] WTO보조금협정상 "금지"되는 보조금으로서 동 협정 제3조 위반 판정을 받았을 것이다.[187]

둘째, 그 외 다른 유형의 보조금은 그러한 보조금이 보조금공여국의 시장, 피해국의 국내시장, 또는 제3국 시장에서 다른 WTO회원국의 이해관계에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s)"[188]를 야기한 경우에만 WTO보조금협정 하에서 "제소가능(actionable)"할 뿐이다. 즉 금지보조금과는 달리 그 존재 자체만으로 WTO보조금협정 위반이 아니며, 다른 WTO 회원국의 동종상품에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s)"를 야기하는 경우에야 비로소 동 협정 위반이 된다. 한편 동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보조금 공여의 '근거'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는 조치이기나 그 밖의 다른 정당한 목적에 기여하는 지원조치라 하더라도 무역왜곡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WTO보조금협정 위반이 된다.

셋째, WTO보조금협정의 발효 초기에는 (ⅰ) 연구개발보조금, (ⅱ) 낙후지역개발보조금, (ⅲ) 환경적응보조금이 협정상 허용되는 보조금으로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동 협정 제31조에 따라, 허용보조금을 규정하고 있는 제8조와 제9조는 회원국들의 합의가 달리 있지 않는 이상 WTO협정의 발효한 이후 5년간만 적용될 예정이었다. 허용보조금 문제를 놓고 회원국 간에 추가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WTO보조금협정의 허용보조금 관련 규정은 2000년 1월 1일자로 효력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기후변화 완화와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사용 촉진이라는 '환경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지원은 WTO보조금협정상 '허용' 내지는 법적으로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

186) 온타리오주의 발전차액지원제도 하에서 풍력 및 태양광 발전업자들은 20년간 일정 매입가격을 보장받았다. 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건설에 온타리오 주에서 생산된 발전설비를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서였다.

187) WTO보조금협정 제4조 제7항은 금지보조금이 "지체없이(without delay)" 철폐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통상적으로 3개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188) WTO보조금협정 제5조.

## 5. 3단계: 수출국 보조금 교부로 인한 수입국에의 부정적 효과의 발생 여부

### (1) 논의의 전제

첫째, 문제된 보조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가 보조금공여국의 국내산업 보조금 교부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ⅰ) 다자적 접근법 즉 WTO에의 제소, (ⅱ) 일방적 접근법 즉 수출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상계조치 부과 등 두 가지가 있다. 3단계는 이 중 피해국이 보조금공여국을 WTO에 제소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189] 둘째, 3단계는 문제된 재생에너지 지원조치가 위 2단계에서 제소가능보조금에 해당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금지보조금의 경우 제소국(피해국)이 문제된 지원조치에 의해 자신에게 "부정적 효과"에 대한 발생하였다는 점을 달리 증명할 필요가 없이 그러한 무역왜곡효과가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조치가능보조금에 대한 WTO제소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제5조의 부정적 효과 중 '심각한 손상' 유무를 두고 특히 제6조 제3항 (c)호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9) 피해국이 (ⅰ)번의 경우와 (ⅱ)번의 경우 WTO보조금협정상 입증해야 할 요건이 다르다. 피해국이 (ⅰ)번을 선택하는 경우, 수입회원국은 수출회원국에서 보조금을 받고 생산된 제품이 수입회원국으로 수입됨으로 인해, 해당 수입상품과 동종인 상품을 생산하는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피해(injury)', '무효화 또는 침해(nullification or impairment)' 또는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가 야기되었음을 보여야 한다. 수입회원국이 (ⅱ)번을 선택하는 경우, 수입회원국은 보조금을 받고 생산된 수출회원국의 제품이 수입회원국으로 수입됨으로 인해, 해당 수입상품과 동종인 상품을 생산하는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피해(injury)'가 야기되었음을 보여야 한다.

**[표9] WTO보조금협정 제5조 및 제6조의 주요 내용 요약**

**제 5 조 부정적 효과**

어떤 회원국도 제1조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보조금의 사용을 통하여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아래와 같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해서는 아니된다. 즉,

| | 부정적 효과의 구체 유형 | 상세내용 |
|---|---|---|
| **(a)** | 피해(injury) | 다른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11] |
| **(b)** | 무효화 또는 침해 (nullification or impairment) | 1994년도 GATT에 따라 다른 회원국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향유하는 혜택, 특히 동 협정 제2조에 따른 양허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12] |
| **(c)** | 심각한 손상 (serious prejudice) |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13] |

**제 6 조 심각한 손상**

**6.3** 아래 사항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 제5조 제(c)항의 의미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 | 심각한 손상의 발생위치 | 상세내용 |
|---|---|---|
| **(a)** | 보조금을 공여한 국가 내 | 보조금으로 인하여 **보조금지급회원국 시장으로의** 다른 회원국 동종상품의 **수입을 배제 또는 방해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
| **(b)** | 제3국 시장 | 보조금으로 인하여 **제3국 시장**으로부터 다른 회원국 동종상품의 수출을 배제 또는 방해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
| **(c)** | [1]보조금 공여국, [2]심각한 손상을 입은 국가, 또는 [3]제3국190) | 보조금으로 인하여 동일시장에서 다른 회원국의 동종상품의 가격에 비해 보조금 혜택을 받은 상품의 **현저한 가격인하**, 또는 동일시장에서의 **현저한 가격인상 억제**, **가격하락** 또는 **판매감소**를 초래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
| **(d)** | 세계시장 (점유율) | 보조금으로 인하여 보조금을 받는 특정 일차상품 또는 산품[17]에 있어서 보조금지급 회원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이전 3년간의 평균 점유율과 비교하여 증가하고, 이같은 증가가 보조금이 지급된 기간에 걸쳐 일관성있는 추세로 나타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

(※ 출처: 필자 작성)

190) 제6조 제(c)항의 경우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는 위치는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i ) 보조금 공여국이 수출국이고 심각한 손상이 입은 국가가 수입국일 수 있다. 이 경우 '수입국 시장 내에서'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 (2) 재생에너지 '전기'에 대한 정부지원의 경우

#### 1) 국내부품사용요건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재생에너지 전기에 대한 지원의 조건으로 국내부품사용요건을 둘 경우, 이는 앞서 2단계에서 확인하였듯이 WTO보조금협정 제3조의 금지보조금에 해당된다. 따라서 3단계 즉 해당 정부지원으로 인해 다른 회원국에게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였음이 달리 입증될 필요가 없다. 금지보조금은 '그 존재 자체로서' 이미 WTO보조금협정 위반이다.

#### 2) 국내부품사용요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

##### 가. 원 칙

국내부품사용요건을 두고 있지 않은 재생에너지전기 정부지원의 경우 해당 정부지원 자체만으로는 WTO보조금협정상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s)"[191]를 야기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며, WTO회원국과 다른 WTO회원국들 사이에 전기를 매매하는 국경간 거래 내지는 국제무역이 있어야 WTO보조금협정과의 합치성이 문제될 것이다. 애당초 전기의 국경간 교역이 없다면, 무역왜곡효과가 발생하였다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리적·시설적 제약을 받는 전기 고유의 특성상, 전기가 국제적인 교역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앞서 확인하였다.[192] 두 개국 이상의 인접국들 사이에 전기의 국경간 교역이 있는 경우에는, WTO보조금협정 제5조 제(c)항 및 제6조의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의 형식으로 부정적 효과가 다른 WTO회원국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193]

---

있다. (ii) 보조금 공여국이 수입국이고 심각한 손상을 입은 국가가 수출국일 경우, 심각한 손상은 '수출국 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iii) 보조금 공여국과 심각한 손상을 입은 국가 모두가 해당 상품의 수출국일 수도 있다. 이 경우 제3국(수입국)의 시장에서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게 된다.

191) WTO보조금협정 제5항.

192) 예를 들어 미국-캐나다와 같이 인접하고 있으며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는 두 국가 사이에서도, 2014년 실제 전기교역량은 미국과 캐나다 전력사용총량의 1.6%에 불과하였다.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US-Canada Electricity Trade Increases" (2015.7.9.자), available at: http://www.eia.gov/todayinenergy/detail.php?id=21992. [2018.10.19. 최종방문]

193) 예를 들어 많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그러하고 있듯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재생에너지에의 우선적 접근권

### 나. 예외적인 경우

다만 재생에너지전기의 국가간 교역 가능성이 없다 해서, WTO보조금협정상 전혀 문제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첫째, 정부지원을 받아 생산된 재생에너지전기는 재생에너지전기의 국가간 교역이 없는 경우 사실상 전량이 보조금공여국 내에서 소비되게 될 것이므로 수입전기의 가격이 더 낮은 경우에도 수입전기의 소비량은 통상적인 시장조건 하에서 발생하였을 소비량보다 줄어들게 될 것이다.[194] 이러한 수입제한효과 때문에 "보조금으로 인하여 보조금지급회원국 시장으로의 다른 회원국 동종상품의 수입을 배제 또는 방해(displace or impede)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WTO보조금협정 제6조 제3항 (a)호에 불합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195]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재생에너지전기에 대한 정부지원이 국내부품사용요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서 제소가능보조금을 구성하여 WTO보조금협정 위반 판정을 받게 될 가능성을 현 시점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단, 그러한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이다. 첫째,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현재 국가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재생에너지 지원제도 중 하나이며 환경적 효과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는 제도인만큼, WTO회원국들이 국내부품사용요건 등 차별적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해 소를 제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196] 자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고, WTO위반이 명확해 보이는 차별적 지원조치에 대해서만 제소가 이루어

(priority access)이나 우선적 전송권(priority dispatch)과 같은 운영 지원조치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정적 효과가 "심각한 손상"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의 상당 부분이 국가 계통운영기관(TSO) 등으로 직접 흡수되게 되므로, 대다수 재생에너지 발전은 에너지시장의 범주 밖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Ilaria Espa, Gracia Marín Durán, *supra* note 10, p. 638; Jérôme Le Page, "Towards a New Deal for the Integration of Renewable Power Generation in the Internal Energy Market: A Regulatory Perspective on European Climate and Energy Policy", in Thomas Cottier and Ilaria Espa (eds), *International Trade in Sustainable Electricity: Regulatory Challenges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2017, pp. 105-107.

194) *See*, e.g., *Advocate General Bot in the Case 573/12*, *Ålands Vindkraft*, Judgments of 1 July 2014 (C-573/12, EU:C:2014:2037), paras. 75-76.

195) Ilaria Espa, Gracia Marín Durán, *supra* note 10, p. 638.

196) Dirk De Bièvre, Ilaria Espa, Arlo Poletti, "No Iceberg in Sight. On the Absence of Potential and Actual WTO Disputes Against Fossil Fuel Subsidies", *17(3)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Politics, Law and Economics*, 2017, p. 395.

질 가능성이 높다.[197] 둘째, 국내부품사용요건 등 차별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경우,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상호 연계되어 있는 전력망을 가지고 국경간 전력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WTO회원국들 사이에서[198]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여 WTO보조금협정에 불합치하게 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지구적 차원에서 국경간 전력 거래는 아직까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둘째, 재생에너지전기 정부지원에 국내부품사용요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보조금을 공여받고 생산된 상품에 대해 피해국(수입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최근 있어 논란이 있다. 한 반보조금 조사에서 미국 조사당국은 캐나다의 BC Hydro사(British Columbia Hydro and Power Authority)가 재생에너지전기 뿐 아니라 다른 상품(연목)을 또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업자들로부터 재생에너지전기를 매입한 행위가 연목에 대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을 내렸다. 전기가 연목의 생산시설 운영에 사용되었으므로, 재생에너지전기에 대한 지원이 해당 업체가 생산하는 모든 상품들에 혜택을 발생시켰다는 이유에서였다.[199] 캐나다는 미국을 상대로 2017년 11월 28일에 WTO에 협의[200]

197) Ilaria Espa, Gracia Marín Durán, *supra* note 10, p. 638.

198)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경우 통합된 단일 전력시장 내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에 상당량의 국경간 전력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의 무역분쟁은 WTO로 회부될 수 없다. 이러한 분쟁은 유럽연합법상 유럽사법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의 배타적 관할범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제344조. *See* also *C-459/03 Commission v Ireland (Mox Plant)*, ECR I-4635, 2006.
아울러 WTO법 측면에서, 28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각각 WTO회원국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한 유럽연합 회원국이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을 WTO에 제소하는 것이 WTO협정상으로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역내적 이유 즉 유럽연합법을 이유로, 그러한 제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Gracia Marín Durán, "Untangl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post-Lisbon: A Competence/Remedy Model", *28(3)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17, pp. 700-710. 단, 이후 브렉시트 협상이 완료되고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이후에는, 영국은 더 이상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므로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영국 사이의 국경간 전력거래에 관해서는 WTO협정에 근거한 제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laria Espa, Gracia Marín Durán, *supra* note 10, p. 639.

199) USTR,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Certain Softwood Lumber Products from Canada: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Determination* (C-122-858), 1 November 2017, comments 48-54. 단 이 경우에도, 재생에너지전기 정부지원을 받고 생산된 재생에너지전기가 직접적인 상계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계조치는 궁극적으로 실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품(연목)에 부과된 것이다.

200) *United States - Countervailing Measures On Softwood Lumber From Canada*, Request For Consultations By Canada, G/L/1205, G/SCM/D116/1, WT/DS533/1, 30 November 2017.

및 2018년 3월 15일에 패널설치를 요청하였고, 4월 9일에 패널이 구성되었다.[201] 캐나다는 미국 조사당국이 (ⅰ) 재생에너지 보조금이 조사대상상품인 연목제품에 귀속된다고 보았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202] (ⅱ) WTO보조금협정 제14조 제(d)항에 따른 보조금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재생에너지전기 판매를 위한 지배적인 시장여건을 사용하지 않고 부적절한 비교기준을 사용하는 등 혜택의 존재 및 수준에 대해 부정확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였다.[203]

### (3)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부품'에 대한 정부지원의 경우

#### 1) 국내부품사용요건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나 부품에 대한 정부지원을 조건으로 국내부품사용요건을 요구할 경우, 앞서 검토하였듯 달리 피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그러한 보조금의 존재만으로도 WTO보조금협정 제3조 위반이 된다.

#### 2) 국내부품사용요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

국내부품사용요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발전업자에 공여된 정부지원은 WTO보조금협정 위반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발전차액지원제도 하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전기보다 그러한 발전기술상품이 보다 손쉽게 국제무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다른 WTO회원국의 시장경쟁관계에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조금공여국의 태양전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인하여 (ⅰ) 다른 회원국의 태양전지 수입의 보조금공여국 시장으로의 수입[204] 또는 제3국 시장

201) *United States - Countervailing Measures On Softwood Lumber From Canada*, Constitution of the Panel established at the request of Canada, WT/DS533/3, 9 July 2018.

202) *United States - Countervailing Measures on Softwood Lumber from Canada*,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by Canada, WT/DS533/2, 16 March 2018, para. 7: "Articles 10, 19.1, 19.3, and 19.4 of the SCM Agreement and Article VI:3 of the GATT 1994 as the United States improperly attributed to the production of softwood lumber products certain alleged subsidies that were bestowed on the production of products that were not under investigation [...]" [밑줄첨가]

203) *United States - Countervailing Measures on Softwood Lumber from Canada*,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by Canada, WT/DS533/2, 16 March 2018, para. 7.

204) WTO보조금협정 제6조 제3항 (a)호.

에서의 판매[205]가 배제되거나 방해받거나, (ii) 보조금공여국 시장 내에서, 다른 회원국의 태양전지 가격에 비해 보조금공여국의 국산 태양전지에 현저한 가격인하(significant price undercutting) · 가격인상 억제(significant price suppression) · 가격하락(price depression) 또는 판매감소(lost sales)가 발생하는 경우[206] WTO보조금협정 제6조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게 된다. 또는 보조금을 공여받고 생산된 태양전지가 수출되어 다른 국가의 태양전지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207]를 야기할 수도 있다. 원인(태양전지에 대한 보조금 공여)과 결과(무역왜곡효과) 사이에 "진정하고 실질적인 관계(genuine and substantial relationship)"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보조금은 WTO보조금협정 제5조 또는 제6조의 위반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208]

WTO보조금협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다양한 경우들 가운데, 보조금을 받고 생산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부품이 "실질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특히 까다로울 수 있다. 첫째, 전술하였듯 WTO회원국들은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를 다자적 수단 즉 WTO에의 제소나 일방적 수단 즉 상계관세 부과를 통해 구제해왔다. 즉 수입국이 일방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실질적 피해에 관한 판단은 다자적 차원에서 WTO패널이나 상소기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 수입국의 국내 조사당국에 의해 피해에 관한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 국내 조사당국은 전지구적 차원의 경제적 또는 환경적 편익보다는 자국 국내산업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209] 둘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부품에 대한 반보조금조사는 보통 반덤핑조사와 병행해서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경우, 각각 2012년 9월과 11월에 유럽위원회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태양광패널 및 그 부품에 관해 반덤핑조사와 반보조금조사를 중복적으로 개시 · 진행하여, 2013년 12월에 27.3~64.9%의 반덤

205) WTO보조금협정 제6조 제3항 (b)호.
206) WTO보조금협정 제6조 제3항 (c)호.
207) WTO보조금협정 제5조 (a)항.
208) Ilaria Espa, Gracia Marín Durán, *supra* note 10, p. 641.
209) Gary N. Horlick and Peggy A. Clarke, "Rethinking Subsidy Disciplines for the Future: Policy Options for Reform", *20(3)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2017, p. 689.

핑관세[210]와 3.5~11.5%의 상계관세[211] 부과를 명령하였던 바 있다.[212]

## 6. 소 결

지금까지 제2절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재생에너지전기 정부지원의 WTO보조금협정 합치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재생에너지전기의 생산 및 사용 촉진을 진정한 목적으로 하는 정부지원조치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취해진 지원조치[213]를 WTO보조금협정 합치성을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재생에너지 '전기'에 대한 정부지원이 국내부품사용요건과 결부되어 있을 경우 WTO 보조금협정 위반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반면 그러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은 재생에너지전기 정부지원은 WTO보조금협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낮다고 생각된다. 재생에너지에 대해 보조금이 공여되더라 하더라도 국내부품사용요건을 두거나 수출실적을 보조금 공여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소국은 그러한 보조금을 WTO보조금협정상 금지보조금이 아닌 제소가능보조금로 제소할 수밖에 없게 된다.[214] 그러나 제소가능보조금의 경우 금지보조금보다 제소국 입장에서 입증해야 할 요건들이 많고 그 내용도 더 복잡하다. 금지보조금의 경우와는 달리, 제소가능보조금의 경우 제소국은 해당 보조금이 특정 기업이나 기업군, 산업이나 산업군에 특정적으로 교부되었고, 다른 WTO 회원국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s)"를 야기하였다는 점을 추가로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사건에서 상소기관이

210)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17/367 of 1 March 2017, OJ 2017 L56/131, para 1.

211) *Ibid*., paras. 1-2. 단, 이후 가격약속(Price Undertaking)을 통해 중국산 수입 태양광패널의 약 75%가 이러한 상계관세 적용을 면제받았다.

212) 위 조치는 이후 일몰재심을 통해 2017년 3월까지 18개월 추가 연장되었다.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17/366 of 1 March 2017, OJ 2017 L56/1, para 784;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17/367 of 1 March 2017, OJ 2017 L56/131, para. 373.

213) 이러한 조치는 허용보조금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WTO보조금협정 제3조에서 금지되는, 국내부품사용요건을 지원의 조건으로 하는 수입대체보조금에 해당됨을 앞서 확인하였다.

214) 단, 일방적 구제조치로서 피해국(수입국)이 보조금 공여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앞서 확인하였다.

혜택분석에 있어 관련시장 획정에 유연한 자세를 보였을 뿐 아니라, 전기 고유의 특성상 국가 간에 교역이 이루어지는 데 지리적 측면이나 시설적 측면에서 일정한 제약이 있음을 앞서 확인하였다.

반면 태양전지, 태양광모듈, 풍력터빈 제조업자에게 시장조건보다 유리한 대출조건을 제시하거나 자금을 지원해주는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및 '부품' 제조업자에 대한 지원은 투자 및 생산비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부품 시장은 전지구적 시장으로서 국가 간 거래에 지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WTO보조금협정에 불합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보인다.

## [표10] 요약: 재생에너지 지원조치의 WTO보조금협정 합치가능성

| 보조금공여국에 취한 조치 유형 | | 1단계: WTO보조금협정의 적용 가부 | | | 2단계 및 3단계: 보조금의 유형에 따른, WTO보조금협정 합치성 | | 피해국에 의한 구제조치 유형 |
|---|---|---|---|---|---|---|---|
| | | 재정적 기여 | 혜 택 | 특정성 | 금지보조금 | 제소가능 보조금 | |
| 보조금 공여 대상이 재생에너지전기인 경우 (예: 발전차액 지원제도) | ① 국내부품 사용요건을 포함한 경우 (WTO보조금협정 위반 가능성 높음) | ○ | △[215] | ○ (특정성이 있다고 간주됨[216]) | ○ | – | ① **WTO제소 가능** (WTO보조금협정 제3조 위반) (해당 재생에너지의 국제무역 여부 불문)<br>② **재생에너지전기에 대한 상계조치 부과가능성**<br>( i ) 분쟁당사국 사이에 문제된 재생에너지의 국경간 교역 · 국제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재생에너지 수입에 대해 일정 조건[217] 하에서 상계조치 가능<br>( ii ) 분쟁당사국 사이에 문제된 재생에너지의 국경간 교역 · 국제무역이 없는 경우: 상계조치 불가 |

215) 이 부분은 캐나다 발전차액지원제도 사건에서 상소기관이 도입된 논리가 향후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달려있다.

216) WTO보조금협정 제2조 제3항. 원문은 다음과 같다. “Any subsidy falling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3 shall be deemed to be specific.”

217) 수입된 재생에너지전기에 대해 일방적 구제조치(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WTO보조금협정 제15조의 의미에서 동종의 재생에너지전기를 생산하는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가 발생한 경우이어야 한다.

| 보조금공여국에 취한 조치 유형 | | 1단계: WTO보조금협정의 적용 가부 | | | 2단계 및 3단계: 보조금의 유형에 따른, WTO보조금협정 합치성 | | 피해국에 의한 구제조치 유형 |
|---|---|---|---|---|---|---|---|
| | | 재정적 기여 | 혜 택 | 특정성 | 금지보조금 | 제소가능 보조금 | |
| | | | | | | | **③ 발전설비 · 부품(국내부품사용요건 대상)에 대한 상계조치는 불가**<br>(∵보조금 공여대상이 아님[218]) |
| | **② 국내부품 사용요건 포함하지 않은 경우**<br>(WTO보조금협정 위반 가능성 상대적으로 낮음[219]) | ○ | △[220] | ○<br>(단, 제소국이 특정성 입증 필요) | × | ○<br>(① 전제: 보조금을 지원받아 생산된 재생에너지전기의 국경간 거래가 있어야<br>② 제소국이 부정적 효과 입증 필요) | **① WTO제소 가능성**<br>(ⅰ) 분쟁당사국 사이에 문제된 재생에너지의 국경간 거래 · 국제무역이 있는 경우(단, 현재 이러한 사례는 많지 않음): WTO보조금협정 제5조 또는 제6조 위반<br>(ⅱ) 분쟁당사국 사이에 문제된 재생에너지의 국경간 거래 · 국제무역이 없는 경우: 제소 불가 |

218) 이 경우 제소국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두고 부과된 국내부품사용요건에 대해 TRIMs협정 제2조 제1항 및 GATT 제III조 제4항 위반을 별도로 주장해야 할 것이다.
219) 앞서 확인하였듯이, 전기의 국경간 거래 내지 국제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20) 이 부분은 캐나다 발전차액지원제도 사건에서 상소기관이 도입된 논리가 향후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달려있다.

| 보조금공여국에 취한 조치 유형 | | 1단계: WTO보조금협정의 적용 가부 | | | 2단계 및 3단계: 보조금의 유형에 따른, WTO보조금협정 합치성 | | 피해국에 의한 구제조치 유형 |
|---|---|---|---|---|---|---|---|
| | | 재정적 기여 | 혜 택 | 특정성 | 금지보조금 | 제소가능 보조금 | |
| | | | | | | | **② 재생에너지전기에 대한 상계조치 부과가능성**<br>( ⅰ ) 분쟁당사국 사이에 문제된 재생에너지의 국경간 거래 · 국제무역이 있는 경우(단, 현재 이러한 사례는 많지 않음): 해당 재생에너지 수입에 대해 일정 조건[221] 하에서 상계조치 가능<br>( ⅱ ) 분쟁당사국 사이에 문제된 재생에너지의 국경간 거래 · 국제무역이 없는 경우: 상계조치 불가 |
| **보조금 공여 대상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 부품인 경우** | **① 국내부품 사용요건을 포함한 경우**<br>(WTO보조금협정 위반 가능성 매우 높음) | ○ | ○<br>(단, 제소국이 혜택의 존재 입증 필요) | ○<br>(단, 제소국이 특정성 입증 필요) | ○ | – | **① WTO제소 가능**<br>(WTO보조금협정 제3조 위반)<br>(해당 발전설비 · 부품의 국제무역 여부 불문)<br>**② 재생에너지전기에 대한 상계조치 불가**<br>(∵보조금 공여대상이 아님) |

221) 재생에너지전기에 대해 일방적 구제조치(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WTO보조금협정 제15조의 의미에서 동종의 재생에너지전기를 생산하는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 보조금공여국에 취한 조치 유형 | | 1단계: WTO보조금협정의 적용 가부 | | | 2단계 및 3단계: 보조금의 유형에 따른, WTO보조금협정 합치성 | | 피해국에 의한 구제조치 유형 |
|---|---|---|---|---|---|---|---|
| | | 재정적 기여 | 혜 택 | 특정성 | 금지보조금 | 제소가능 보조금 | |
| | | | | | | | **③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상계조치 부과가능성**<br>(ⅰ) 분쟁당사국 사이에 문제된 발전설비의 국경간 교역·국제무역이 있는 경우(사례 다수): 해당 발전설비 수입에 대해 일정 조건[222] 하에서 상계조치 가능<br>(ⅱ) 분쟁당사국 사이에 문제된 발전설비의 국경간 거래·국제무역이 없는 경우: 상계조치 불가 |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어야 한다.

222) 수입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일방적 구제조치(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WTO보조금협정 제15조의 의미에서 동종의 발전설비를 생산하는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어야 한다.

| 보조금공여국에 취한 조치 유형 | | 1단계: WTO보조금협정의 적용 가부 | | | 2단계 및 3단계: 보조금의 유형에 따른, WTO보조금협정 합치성 | | 피해국에 의한 구제조치 유형 |
|---|---|---|---|---|---|---|---|
| | | 재정적 기여 | 혜 택 | 특정성 | 금지보조금 | 제소가능 보조금 | |
| | **② 국내부품 사용요건 포함하지 않은 경우**<br>(WTO보조금협정 위반 가능성 높음) | ○ | ○<br>(단, 제소국이 혜택의 존재 입증 필요) | ○<br>(단, 제소국이 특정성 입증 필요) | × | ○<br>(① 전제: 보조금을 받고 생산된 재생에너지 발전기술설비의 국경간 거래 · 국제무역이 있어야<br>② 제소국이 부정적 효과 입증 필요) | **① WTO제소 가능**<br>( i ) 분쟁당사국 사이에 문제된 발전설비의 국경간 교역 · 국제무역이 있는 경우(사례 다수): WTO보조금협정 제5조 또는 제6조 위반<br>( ii ) 분쟁당사국 사이에 문제된 발전설비의 국경간 · 국제무역이 없는 경우: 제소 불가<br>**② 재생에너지전기에 대한 상계조치 불가**<br>(∵보조금 공여대상이 아님)<br>**③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상계조치 부과가능성**<br>( i ) 분쟁당사국 사이에 문제된 발전설비의 국경간 교역 · 국제무역이 있는 경우(사례 다수): 해당 발전설비 수입에 대해 일정 조건[223] 하에서 상계조치 가능 |

223) 마찬가지로, 수입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일방적 구제조치(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WTO보조금협정 제15조의 의미에서 동종의 발전설비를 생산하는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어야 한다.

| 보조금공여국에 취한 조치 유형 | | 1단계: WTO보조금협정의 적용 가부 | | | 2단계 및 3단계: 보조금의 유형에 따른, WTO보조금협정 합치성 | | 피해국에 의한 구제조치 유형 |
|---|---|---|---|---|---|---|---|
| | | 재정적 기여 | 혜 택 | 특정성 | 금지보조금 | 제소가능 보조금 | |
| | | | | | | | (ii) 분쟁당사국 사이에 문제된 발전설비의 국경간 교역·국제무역이 없는 경우: 상계조치 불가 |

(※ 출처: 필자 작성)

○ : 긍정

△ :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까지 완전히 확립되지는 않은 경우

× : 부정

- : 금지보조금도 그 정의상으로는 제소가능보조금의 한 종류임

# 제3절 GATT 및 TRIMs협정과의 합치성 검토

## 1. 문제의 소재

국가들은 국내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에너지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부품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또는 수량 이상으로 사용할 것을 투자 허용으로 조건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두는 것은 WTO협정 위반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예를 들어 WTO회원국은 다른 WTO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해야 하며,[224] "특정 수량 또는 비율로 상품을 혼합, 가공 또는 사용하는 것에 관련된 내국의 수량적 규정으로서, 그 적용을 받는 특정 수량 또는 비율의 상품이 국내공급원으로부터 공급되어야 함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규정을 설정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225] 아울러 국내부품사용요건의 합치성이 문제되는 또다른 WTO규범으로서 TRIMs협정이 있다. TRIMs협정 또한 제III조 제4항을 준용하여 내국민대우의무를 부과하고, 그러한 의무의 일환으로 국내부품사용요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부품사용요건은 이미 다수의 사건에서 WTO협정 위반 판정을 받았던 바 있다. 본 절에서는 특히 이러한 조치를 방어하기 위해 피소국이 WTO협정상 어떠한 법적 권리를 원용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 제III조 내국민대우의무의 적용배제 조항으로서 작동하는 GATT 제III조 제8항 (a)호를 중심으로 조문의 구조와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III조 제8항 (a)호는 정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의 정부조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III조 제8항 (a)호에 따라 정부조달 예외를 인정받는 경우, 제III조 제4항 및 제5항이 해당 조치에 적용되지 않게 된다.[226] GATT 제III조 제8항 (a)호 정부조달 예외는

224) GATT 제III조 제4항.

225) GATT 제III조 제5항.

226) 단 해당 회원국이 WTO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GATT 제III조 제8항 (a)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은 여전히 받을 것이다.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사건에서 처음으로 원용되었으며, WTO패널과 상소기관에 의해 해석이 이루어진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 2. 제III조 제8항 (a)호의 해석

제III조 제8항 (a)호는 태양에너지 발전과 관련된 다수의 사건에서 다루어졌으며, WTO 차원에서는 이 규정에 대해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사건에서 처음으로 해석이 이루어졌다.[227]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 가능하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캐나다 온타리오전력청(Ontario Power Authority: OPA)이 설립한 발전차액지원제도 하에서 태양광발전 및 풍력발전시설 건설에 적용되는 국내부품사용요건에 관해 WTO에 소를 제기하였다. 온타리오전력청(OPA)은 온타리오 주의 2004년 전력구조개편법(Electricity Restructuring Act) 하에서 설립된 정부기관으로서, 온타리오 주의 전력 공급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 하에서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여 온타리오 전력체제에 전기를 공급한 발전업자들에게는 20년 또는 40년의 계약에 따라 일정한 매입가격이 보장되었다. 대신, 발전설비에 들어가는 부품의 일정 비율이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만든 제품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계약에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과 일본은 첫째,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국산부품사용요건으로 인해 자국산 발전설비가 온타리오산 동종상품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았으므로, GATT 제III조 제4항 내국민대우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228] 둘째, 유럽연합과 일본은 캐나다의 조치가 TRIMs협정 제2조 제1항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제소국들은 캐나다의 WTO정부조달협정 위반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캐나다 온타리오전력청(OPA)은 동 협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229] 제소국들의 주장에 대해, 캐나다는 GATT 제III조 제8항 (a)

227) Panel Report,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para. 7.122.

228) *Ibid*., paras. 3.1-4.3.

229) 한편 OPA는 새로 신설된 Integrated Electricity System Operator (IESO)로 2015년 1일부로 통합되었다. IESO는 온타리오 주 에너지부의 산하기관이다. 개정 GPA는 온타리오주의 "모든 부(All Ministries of the Province)"에 적용된다. 즉 이제는 IESO가 WTO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임은 분명해졌다. 단, 그렇다하여 온타리오 주의 모든 발전차액지원제도 계약들이 WTO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재판매할 목적으로, 또는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재판매하기 위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공급하

호 정부조달 예외가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조치에 적용된다고 반박하였다. 캐나다는 온타리오주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청정 에너지원으로부터 얻은 전력의 온타리오주 공급을 규율하는 법률 및 요건”에 해당되며, “상업적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재화의 생산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고(not with a view to commercial resale or with a view to use in the production of goods for commercial sale) 주장하였다.[230]

이 시건에서 캐나다가 원용한 제III조 제8항 (a)호는 GATT 제III조 내국민대우의 적용배제(derogation) 조항으로서 이해되어 왔다. 정보조달 행위는 동 호에 규정된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제III조 내국민대우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231] 단 이러한 적용배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문제된 조치가 “상품의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 또는 요건”을 구성하고, 둘째, 조치가 “정부기관에 의하여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구매되는 상품의 조달”에 관한 것이며, 셋째, 그러한 조달이 “상업적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재화의 생산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정부의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232] 이 세 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야 제III조 제8항 (a)호를 통한 적용배제가 가능하다.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사건과 India - Solar Cells 사건에서는 국내부품사용요건을 두고 첫 번째 요건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으며, 두 번째, 세 번째 요건에 대해서는 패널에 의해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만이 이루어지거나[233] 상소기관에 의해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moot”) 판정되었다.[234] 이하에서는 제III조 제8항 (a)호에 관해 상소기관이 보인 해석을 검토하고, 그러한 해석이 가지는 의미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

는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달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는 개정 GPA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 WTO정부조달협정, 제II조 제2항 (a)호 (ii)목. 원문은 다음과 같다.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covered procurement means procurement for governmental purposes: (a) of goods, services, or any combination thereof: (ii) not procured with a view to commercial sale or resale, or for use in the production or supply of goods or services for commercial sale or resale;” [밑줄첨가]

230) Appellate Body Report,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para. 1.10.

231) *Ibid*., para. 5.56.

232) *Ibid*., para. 5.39.

233) Panel Report, *India - Solar Cells*, para. 7.137.

234) Appellate Body Report,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para. 5.84.

### (1) 요건1: 문제된 조치가 "상품의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 또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패널의 입장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사건 패널은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특히 "규율하는"의 의미에 주목하였다. 패널은 국내부품사용요건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력의 구입(조달)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온타리오주에서 생산된 설비의 구매와 사용을 강제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235] 국내부품사용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전기의 구입이 이루어졌으므로 동 요건은 GATT 제III조 제8항 (a)호의 의미에서 조달을 "규율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이러한 해석대로라면, 차별의 대상이 된 상품(발전설비 부품)과 구입(조달)의 대상이 된 상품(전기) 사이에 어떠한 연결성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들 상품이 상호 경쟁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고, 발전설비가 없이는 전기를 생산·조달할 수 없다는 등 양 상품이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을 필요도 없다. 따라서 패널은 제III조 제8항 (a)호가 오로지 조달대상이 된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본 유럽연합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236] 온타리오주의 국내부품사용요건이 제III조 제8항 (a)호의 의미에서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이라고 보았다.

#### 2) 상소기관의 입장(패널판정 파기)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국내부품사용요건이 해당 조달을 규율하였는지를 검토함에 있어 "구매되는 상품(product purchased)"이라는 문

235) Panel Report,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para. 7.124.

236) *Ibid*., para. 7.126. 단, 패널은 문제된 상품들 사이에 일정 정도의 유사성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국내부품사용요건의 적용을 받는 상품(발전설비)와 조달대상상품(전기)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성(close relationship)"이 있어야 한다고 부연하였다. Panel Report,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para. 7.127. 그러나 전기와 발전설비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패널이 제III조 제8항 (a)호를 적용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으로 본 것은 아니다. 패널은 국내부품사용요건이 온타리오주에 의한 조달에의 전제조건이므로 그러한 요건이 문제된 조달을 "규율(govern)"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Panel Report,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para. 7.127.

구에 주목하였다. 상소기관은 제III조 제8항 (a)호 정부조달 예외는 제III조 내국민대우의무와의 관계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정부조달 예외는 "제III조의 적용을 받는, 외국상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고 그러한 차별적 대우가 정부기관에 의한, 구매되는 상품의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 또는 요건에 의해 야기된 것이어야 한다."[237] "동일한 차별적 대우"가 제III조 내국민대우의무와 제III조 제8항 (a)호 정부조달 예외 하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III조 제8항 (a)호의 "구매되는 상품"은 제III조의 적용대상인 "상품"의 범위에도 연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제III조 제8항 (a)호 정부조달 예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III조의 적용을 받는,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외국상품(발전설비)과 구매상품 즉 정부조달 대상상품(전기) 사이에 경쟁관계가 있어야 한다.[238] 경쟁관계에는 문제된 상품들이 동일한 경우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이거나 대체가능한 경우가 포함된다.[239] 따라서 상소기관은 양 상품이 경쟁관계가 없기 때문에, 온타리오주의 국내부품사용요건은 제III조 제8항 (a)호의 의미에서 "정부기관에 의하여 [...] 상품의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 또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40] 따라서 상소기관은 이 요건에 관한 패널 판정을 파기하면서, 발전설비와 관련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차별은 제III조 제8항 (a)호 정부조달 예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 3) 평 가

상소기관은 법률 · 규정 · 요건과 정부조달 사이에 "연결성(articulated connection)"이 있어 후자가 전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고,[241] 제III조 제8항 (a)호는 정부가 구매한 동종의 국내상품에 비해 수입상품이 차별을 당했을 경우에야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242] 따라서 제III조 제8항 (a)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부조달 대상상품'

237) Appellate Body Report,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para. 5.63.
238) *Ibid*., para. 5.74.
239) *Ibid*., para. 5.63.
240) *Ibid*., para. 5.79.
241) *Ibid*., para. 5.58.
242) *Ibid*., para. 5.63.

과 '조달과 관련된 법 제도가 규율하는 상품'이 경쟁관계에 놓여 있어야 한다.[243]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사건[244]과 India - Solar Cells 사건[245]에서는 정부가 구매하는 상품이 '재생에너지 전기'였고 정부조달과 관련된 법 제도가 규율하는 상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였다. 양자는 경쟁관계에 놓여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소국이 제III조 제8항 (a)호를 통해 국내부품사용요건을 제III조의 적용범위로부터 배제시킬 수 없다는 판정이 내려졌다.[246]

다만, 상소기관은 문제된 상품들 사이에 경쟁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제III조 제8항 (a)호가 적용될 가능성의 여지를 두는 듯한 평가를 일부 남겨두기도 하였다. 즉 상소기관에 따르면, 상품들 간의 경쟁관계가 어떠한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상품 생산에 사용된 "투입요소(inputs)"와 "생산과정(process)"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247] 이러한 설명을 두

243) *Ibid*., para. 5.79: "We have found above that the conditions for derogation under Article III:8(a) must be understood in relation to the obligations stipulated in the other paragraphs of Article III. This means that the product of foreign origin allegedly being discriminated against must be in a competitive relationship with the product purchased. In the case before us, the product being procured is electricity, whereas the product discriminated against for reason of its origin is generation equipment. These two products are not in a competitive relationship. [...] Accordingly, the discrimination relating to generation equipment contained in the FIT Programme and Contracts is not covered by the derogation of Article III:8(a) of the GATT 1994. [...]" [밑줄첨가]

244) *Ibid*.

245) Appellate Body Report, *India - Solar Cells*, para. 5.40.

246) 예를 들어,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사건 패널은 ( i ) 온타리오 주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 하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즉 전기를 "상업적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하였고, ( i ) 기 등록된 전력 소매업자들과의 경쟁관계 하에서 재판매가 이루어진다는 이유에서 GATT 제III조 제8항 (a)호 정부조달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단, 패널은 "상업적 재판매(commercial resale)"이 반드시 수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시하였다. "손실이 발생하는 판매도 일반적인 상업활동의 일부로 볼 수 있고 실제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Panel Report,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para. 7.151. 결과적으로, 패널은 GATT 제III조 제8항 (a)호 정부조달 예외가 적용될 수 없었으므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국내부품사용요건이 GATT 제III조 제4항 위반이라고 보았다. *Ibid*., para. 7.167.
상소기관도 "상업적 재판매 [...] 목적이 아닌(not with a view to commercial resale)"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 이러한 패널 판단에 대체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Appellate Body Report,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para 5.71. 다만 이 부분을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입시키지는 않고, 아래와 같이 상이한 이유에서 GATT 제III조 제8항 (a)호 정부조달 예외가 이번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상소기관은 GATT 제III조 제8항 (a)호 정부조달 예외가 "TRIMs협정 제2조 제2항 및 동 협정에 부속되어 있는 예시목록(Illustrative List)의 범위에 속하는" 조치에 적용된다고 보았다. *Ibid*., para 5.33. 따라서 제III조 제8항 (a)호 정부조달 예외를 이유로 GATT 제III조 제4항이 문제된 조치에 적용되지 않게 될 경우, TRIMs협정 제2조 제1항도 동 조치에 적용되지 않게 된다. Arwel Davies, "The GATT Article III:8(a) Procurement Derogation and Canada - Renewable Energ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ume 18, Issue 3, 2015, p. 544.

247) Appellate Body Report,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para. 5.63: 'We have found above that

고, 일각에서는 제III조 제8항 (a)호에 "생산 및 가공방식(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PPMs)"을 고려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평가가 제기되었던 바 있다.[248] 즉 정부가 구매한 전기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활용하여 생상된 것이므로, 그러한 전기와 발전설비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제III조 제8항 (a)호의 첫 번째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사건 패널은 이러한 판단에 근거해서 국내부품사용요건이 제III조 제8항 (a)호의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반대로, India - Solar Cells 사건 패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사건에서 상소기관이 전기 생산에의 투입요소와 생산과정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재생에너지 전기 사이에 관계를 판단하는 데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이유에서였다.[249] 또한 상소기관은 투입요소와 생산과정에 대한 고려는 전술한 "경쟁관계" 기준을 대체할 수 없으며, 경쟁관계 판단을 위한 참고요소에 불과하다고 보았다.[250] 결과적으로 India - Solar Cells 사건 판정에 비추어 볼 때,

---

Article III:8(a) stipulates conditions under which derogation from the obligations in Article III takes place. The derogation in Article III:8(a) becomes relevant only if there is discriminatory treatment of foreign products that are covered by the obligations in Article III, and this discriminatory treatment results from laws, regulations, or requirements governing procurement by governmental agencies of products purchased. Both the obligations in Article III and the derogation in Article III:8(a) refer to discriminatory treatment of products. Because Article III:8(a) is a derogation from the obligations contained in other paragraphs of Article III, we consider that the same discriminatory treatment must be considered both with respect to the obligations of Article III and with respect to the derogation of Article III:8(a). Accordingly, the scope of the terms "products purchased" in Article III:8(a) is informed by the scope of "products" referred to in the obligations set out in other paragraphs of Article III. Article III:8(a) thus concerns, in the first instance, the product that is subject to the discrimination. The coverage of Article III:8 extends not only to products that are identical to the product that is purchased, but also to "like" products. In accordance with the Ad Note to Article III:2, it also extends to products that are directly competitive to or substitutable with the product purchased under the challenged measure. For convenience, this range of products can be described as products that are in a competitive relationship. What constitutes a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s may require consideration of inputs and processes of production used to produce the product. In its rebuttal of Canada's claim under Article III:8(a), the European Union acknowledges that the cover of Article III:8(a) may also extend to discrimination relating to inputs and processes of production used in respect of products purchased by way of procurement. Whether the derogation in Article III:8(a) can extend also to discrimination of the kind referred to by the European Union is a matter we do not decide in this case.' [밑줄첨가]

248) Steve Charnovitz, Carolyn Fischer, "Canada-Renewable Energy: Implications for WTO Law on Green and Not-So-Green Subsidies", *EUI Working Paper RSCAS 2014/109*, pp. 18-19.

249) Panel Report, *India - Solar Cells*, para. 7.128.

250) Appellate Body Report, *India - Solar Cells*, para. 5.24.

전기가 발전설비와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을 보일 수 있을 경우에만 제III조 제8항 (a)호 하에서 "생산 및 가공방식"이 참작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앞서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사건에서는 상소기관은 경쟁관계를 판단하는 데 "상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투입요소와 생산과정에 대한 고려"가 있을 수 있다고 설시하였으므로, 위 두 사건에서 상소기관이 보인 입장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상품에의 투입요소와 생산과정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251]

### (2) 요건2: 조달이 "정부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제III조 제8항 (a)호의 두 번째 요건은 상품의 조달이 "정부기관에 의하여(by governmental agencies)"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정부기관"이라 함은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정부를 위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공적 영역에서 행동하는 실체라고 설명하였던 바 있다.[252] 따라서 제III조 제8항 (a)호의 두 번째 요건은 국영무역기업(State Trading Enterprises: STEs)에 관해 규정한 GATT 제XVII조보다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국가가 해당 기관을 단순히 소유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는 제III조 제8항 (a)호의 두 번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253] 해당 기관이 정부를 대신해서 행동하고 있고 그러한 행동을 취할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점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254]

---

251) 앞서 [표2]에서 확인하였듯, 인도는 재생에너지를 두고 미국의 여러 주 정부들이 부과하여 온 국내부품사용요건과 보조금 공여에 대해 WTO에 소를 제기하였다(DS510). 이 사건을 통해 제III조 제8항 (a)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도출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252) Appellate Body Report,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para. 5.61: '[...] In our view, the term "governmental agencies" refers to those entities acting for or on behalf of government in the public realm within the competences that have been conferred on them to discharge governmental functions. This further confirms our understanding that a "governmental agency" is an entity acting for or on behalf of government and performing governmental functions within the competences conferred on it.' [밑줄첨가]

253) Holger P. Hestermeyer, Laura Nielsen, "The Legality of Local Content Measures under WTO Law", *48(3) Journal of World Trade*, 2014, p. 578.

254) Aditya Sarmah, *supra* note 19, p. 212.

전기의 생산과 분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의 기능이다.[255] 따라서 발전 및 배전에 관여하는 기관은 정부가 그러한 권한을 해당 기관에 부여한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며, 제III조 제8항 (a)호의 의미에서 "정부기관"으로서 행동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India - Solar Cells 사건에서는 패널 단계에서 태양광발전업자로부터 전기를 매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정부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아 정부를 대신해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데 분쟁당사자간 이견이 없었으며, 패널도 이에 동의하였다.[256] 따라서 상소기관도 제III조 제8항 (a)호의 두 번째 요건에 관해서는 달리 검토를 하지 않았다.

정부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정부가 배타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할 경우, 제III조 제8항 (a)호의 두 번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 (3) 요건3: "상업적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재화의 생산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조달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제III조 제8항 (a)호의 세 번째 요건은 상품의 조달이 "상업적[으로] 재판매"할 목적이거나 "상업적 판매를 위한 재화의 생산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며, "정부의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해당 상품을 산업적으로 재판매하기 위해,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상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 조달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이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점 모두에서 전체 거래를 살펴보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위해 당사자들의 장기적인 시장 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상업적 재판매 여부를 판매자의 관점에서 즉 수익만을 중심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상소기관은 거래가 공정가격으로(at arm's length)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라

255) Gabrielle Marceau, "The WTO in the Emerging Energy Governance Debate", *5(3) Global Trade and Customs Journal*, 2010, p. 92.

256) Panel Report, *India - Solar Cells*, paras. 7.147-7.151.

고 보았다.[257] 따라서 국내부품사용요건의 적용대상인 '상품(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이 상업적으로 재판매되었거나 또는 그러한 상품(재생에너지 발전설비)으로부터 생산된 '전기'가 공정가격으로 판매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둘째, 상품의 조달이 정부의 목적을 위한("for governmental purposes") 것이어야 한다. 즉 "정부가 소비하거나 또는 정부가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혜자에게 제공한 것"이어야 한다. 정부조달 대상상품은 이행되는 정부 기능과 "합리적인 관계(rational relationship)"에 있어야 한다.[258] India - Solar Cells 사건 패널은 인도의 태양광발전 프로그램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259] 그러나 전기를 전력망에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목적"에 해당되며, 발전설비의 조달을 규정하는 국내부품사용요건은 전기를 전력망에 공급하는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인다.[260]

257) Appellate Body Report,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para. 5.71.

258) *Ibid*., para. 5.68: '[...W]here products purchased are consumed in governmental use, Article III:8(a) does not require that this be "immediate or ultimate". Therefore, we are of the view that the phrase "products purchased for governmental purposes" in Article III:8(a) refers to what is consumed by government or what is provided by government to recipients in the discharge of its public functions. The scope of these functions is to be determined on a case by case basis. Finally, we recall that Article III:8(a) refers to purchases "for governmental purposes". The word "for" relates the term "products purchased" to "governmental purposes", and thus indicates that the products purchased must be intended to be directed at the government or be used for governmental purposes. Thus, Article III:8(a) requires that there be a ra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product and the governmental function being discharged.' [밑줄첨가]

259) Appellate Body Report, *India - Solar Cells*, para. 7.162.

260) Aditya Sarmah, *supra* note 19, p. 213.

# 제4장

# 결 론

# 제4장 결 론

재생에너지의 촉진은 2020년 이후 파리협정에 따른 기후변화 완화목표 달성과 저탄소 • 에너지효율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완화 및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한 이러한 노력은 고무적이나, 향후 우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국제통상규범과의 합치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지원의 다양한 세부 유형을 파악하고 각 유형이 국제통상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을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을 개정하고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안)>을 보다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가야 할' 요소들을 논의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고에서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하다.

첫째, 재생에너지의 거래는 전기의 특성상 교역국 간의 지리적 · 시설적인 제약을 받게 되므로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무역왜곡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그리고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사건에서 상소기관이 혜택분석에 유연한 입장을 취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국내부품사용요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즉 비차별적 성격의 재생에너지전기 정부지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WTO보조금협정에 불합치될 가능성이 낮음을 앞서 확인하였다.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유형의 상품으로서, 국경간 거래가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지원은 WTO보조금협정에 불합치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재생에너지전기 정부지원에 국내부품사용요건을 결부시킬 경우에는 전기의 국경간 거래 유무를 불문하고 그러한 지원조치의 WTO협정 합치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

이 예상된다. 실제로, 에너지 보조금과 관련하여 제기된 지금까지의 WTO사건들은 모두 국내부품사용요건과 같은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에 관한 것이었다. 국내부품사용요건은 많은 경우 국내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산업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업자가 발전설비 부품의 일정 비율을 국내적으로 구할 것을 발전차액지원제도 하에서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강제함으로써,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외국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수입상품에 대한 차별대우로서 GATT 제III조 제4항과 TRIMs협정 제2조 제1항 위반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아직까지 판례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으나[261] WTO보조금협정 제3조에서 금지하는 금지보조금을 구성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262]

셋째,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사건과 India - Solar Cells 사건에서 상소기관이 GATT 제III조 제8항 (a)호의 정부조달 예외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국내부품사용요건의 GATT 제III조 제4항 및 TRIMs협정 제2조 제1항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항변사유로서 제III조 제8항 (a)호가 활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제III조 제8항 (a)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조달과 관련된 법 제도가 규율하는 상품(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외국상품)과 정부조달 대상상품이 경쟁관계에 놓여 있어야 한다.[263] 그러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국내부품사용요건의 경우, 차별대우 즉 국내부품사용요건은 '발전설비'에 적용되는 반면 정부조달 대상상품은 '전기'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

261) Canada - Renewable Energy/FIT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패널단계에서 충분한 사실관계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WTO보조금협정 제1조 '혜택'에 관한 분석을 완료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문제된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혜택'을 발생시킨 것인지에 관해 결론을 검토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Appellate Body Report,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para. 5.244.

262) 이와 같은 제도는 수입부품을 사용하는 대신 국내부품을 사용할 경우 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WTO보조금협정 제1조의 보조금의 구성요건 즉 재정적 기여가 있고 그에 따라 혜택이 발생하였다는 점만 제소국이 보일 수 있다면, 위 조치가 WTO보조금협정 제3조 제1항 (b)호의 금지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제소국이 입증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금지보조금의 경우 WTO보조금협정 제2조에 따른 특정성이나 제5조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제소국이 달리 보일 필요는 없음을 앞서 확인하였다. WTO보조금협정 제2조 제3항 및 제3부 참조.

263) Appellate Body Report,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para. 5.74.

마지막으로, 2017년 12월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단가저감” 및 “기술추격”을,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기술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향후 우리 정부가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부품사용요건을 사용할 유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한시적으로 5년간 도입할 예정인 소규모 민간 발전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향후 보다 확대 적용하거나 그 밖의 지원제도를 새로 도입하게 된다면, 그러한 지원의 조건으로서 국내부품사용요건이 직·간접적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국내부품사용요건은 활용하지 않으면서도’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면서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떠한 대안적인 지원·유인책이 가능할지에 관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민간 차원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업자에 대한 지원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재생에너지 발전기술 및 설비에 대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가 그러한 발전기술 및 설비를 개발·활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적어도 WTO보조금협정과의 합치성 논란은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일견 보인다. WTO보조금협정은 제1조 제1항 (a)호 (1)목의 (iii)에서, “정부가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동 협정의 의미에서 보조금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264] 또한 다른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부지원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국제통상법적 합치성을 검토하여, 적절한 경우 우리 재생에너지 발전 산업에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64) “1.1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 subsidy shall be deemed to exist if:
(a)(1) there is a financial contribution by a government or any public body within the territory of a Member (referred to in this Agreement as "government"), i.e. where: [...]
(iii) a government provides goods or services other than general infrastructure, or purchases goods;” [밑줄첨가]

# 참고문헌

# 참고문헌

## □ 단행본 · 논문 · 보고서

Ang, Geraldine, "Overcoming barriers to international investment in clean energy", Investment Insights, OECD, 2015

Asmelash, Henok Birhanu, "Energy Subsidies and WTO Dispute Settlement: Why Only Renewable Energy Subsidies Are Challenged", *18(2)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2015

Bigdeli, Sadeq Z., "Clash of Rationalities: Revisiting the Trade and Environment Debate in Light of WTO Disputes over Green Industrial Policy", *6(1) Trade, Law and Development*, 2014

Charnovitz, Steve; Carolyn Fischer, "Canada-Renewable Energy: Implications for WTO Law on Green and Not-So-Green Subsidies", *EUI Working Paper RSCAS 2014/109*

Chatzivasileiadis, Spyros; Damien Ernst, "The State of Play in Cross-Border Electricity Trade and the Challenges towards a Global Electricity Market Environment", in Thomas Cottier and Ilaria Espa (eds), *International Trade in Sustainable Electricity: Regulatory Challenges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Cosbey, Aaron; Petros C. Mavroidis, "A Turquoise Mess: Green Subsidies, Blue Industrial Policy and Renewable Energy – the Case for Re-drafting the Subsidies Agreement of the WTO", *17(1)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2014

_____; Luca Rubi, "Does it FIT? An Assessment of the Effectiveness of Renewable Energy Measures and of the Implications of the Canada – Disputes", *E15 Initiative*, 2013

Davies, Arwel, "The GATT Article III:8(a) Procurement Derogation and Canada - Renewable Energ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ume 18, Issue 3, 2015

De Bièvre, Dirk; Ilaria Espa; Arlo Poletti, "No Iceberg in Sight. On the Absence of Potential and Actual WTO Disputes Against Fossil Fuel Subsidies", 17(3)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Politics, Law and Economics, 2017

Deringer, Hanna; Fredrik Erixon; Philipp Lamprecht; Erik van der Marel, "The Economic Impact of Local Content Requirements: A Case Study of Heavy Vehicles", *ECIPE OCCASIONAL PAPER 1/2018*, 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2018

Durán, Gracia Marín, "Sheltering Government Support To 'Green' Electricity: the European Union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67(1)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2018

_____, "Untangl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post-Lisbon: A Competence/Remedy Model", *28(3)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17

Espa, Ilaria; Gracia Marín Durán, "Renewable Energy Subsidies and WTO Law: Time to Rethink the Case for Reform Beyond Canada - Renewable Energy/FIT Program", *21(3)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2018

Hestermeyer, Holger P.; Laura Nielsen, "The Legality of Local Content Measures under WTO Law", *48(3) Journal of World Trade*, 2014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Summary for Policymakers", in Ottmar Edenhofer *et al*. (eds.), *Climate Change 2014: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Working Group III Contribution to the Fif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International Energy Agency, *Electricity Information: Overview*, 2017, available at: https://www.iea.org/publications/freepublications/publication/ElectricityInformation2017Overview.pdf [2018.10.22. 최종방문]

_____, *World Energy Outlook 2016: Executive Summary*, IEA, 2016, available at: https://www.iea.org/publications/freepublications/publication/WorldEnergyOutlook2016ExecutiveSummaryEnglish.pdf. [2018.10.21. 최종방문]

_____, *Energy and Climate Change - World Energy Outlook Special Report*, IEA, 2015, available at: https://www.iea.org/publications/freepublications/publication/WEO2015SpecialReportonEnergyandClimateChange.pdf. [2018.10.21. 최종방문]

_____, *Redrawing the Energy-Climate Map - World Energy Outlook Special Report*, IEA, 2013, available at: https://www.iea.org/publications/freepublications/publication/WEO_Special_Report_2013_Redrawing_the_Energy_Climate_Map.pdf

_____, *World Energy Outlook - A Renewable Energy Outlook*, 2012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UNEP, *Trade and Green Economy - A Handbook*, 2014, available at: https://www.iisd.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s/trade-green-economy-handbook-third-edition-en.pdf. [2018.10.19. 최종방문]

Le Page, Jérôme, "Towards a New Deal for the Integration of Renewable Power Generation in the Internal Energy Market: A Regulatory Perspective on European Climate and Energy Policy", in Thomas Cottier and Ilaria Espa (eds), *International Trade in Sustainable Electricity: Regulatory Challenges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2017

Marceau, Gabrielle, "The WTO in the Emerging Energy Governance Debate", *5(3) Global Trade and Customs Journal*, 2010

Matsushita, Mitsuo; Thomas J. Schoenbaum; Petros C. Mavroidi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Law, Practice, and Policy*,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Mavroidis, Petros C., George A. Bermann, Mark Wu, The Law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Documents, Cases and Analysis, West, 2010

_____; Patrick A. Messerlin, Jasper M. Wauters, *The Law and Economics of Contingent Protection in the WTO*, Edward Elgar, 2008

OECD, "The economic impact of local content requirements", *Trade Policy Note*, 2016.2

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RENEWABLES 2016 - GLOBAL STATUS REPORT*, REN21, 2016, available at: http://www.ren21.net/wp-content/uploads/2016/05/GSR_2016_Full_Report_lowres.pdf. [2018.10.21. 최종방문]

Rubi, Luca, "Ain't Wastin Time No More: Subsidies for Renewable Energy, the SCM Agreement, Policy Space and Law Reform", *15(2)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2012

Sarmah, Aditya, "Renewable Energy and Article III:8(a) of the GATT: Reassessing the Environment-Trade Conflict in Light of the 'Next Generation' Cases", *9(2) Trade, Law and Development*, 2017

Van den Bossche, Peter; Werner Zdouc, *The Law and Policy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ext Cases and Materials*, 3r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Trade Remedies: Targeting the Renewable Energy Sector, 2014*, available at: http://unctad.org/en/PublicationsLibrary/ditcted2014d3_en.pdf. [2018.10.19. 최종방문]

USTR,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Certain Softwood Lumber Products from Canada: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Determination (C-122-858)*, 1 November 2017

WTO and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Trade and Climate Change - WTO/UNEP Report, 2009*

Wu, Mark; James Salzman, "The Next Generation of Trade and Environment Conflicts: The Rise of Green Energy Policy", *108(2)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2014

Wolfrum, Rüdiger; Peter-Tobias Stoll, Michael Koebele, *WTO - Trade Remedies*, Brill Academic Pub, 2007

이천기,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지원사업에의 WTO 보조금협정 적용가능성 연구 -'지역특정성' 등 특정성 요건을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4

## □ 조약, 국제기구 문서 및 당사국 제출문서

Advocate General Bot in the Case 573/12, *Ålands Vindkraft*, Judgments of 1 July 2014 (C-573/12, EU:C:2014:2037)

C-459/03 *Commission v Ireland (Mox Plant)*, ECR I-4635, 2006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17/367 of 1 March 2017, OJ 2017 L56/131

Directive 2009/2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OJ [2009] L140/16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M(2016) 767 final/2, 23 February 2017

_____, *Communication on a Policy Framework for Climate and Energy in the period from 2020 to 2030*, COM(2014) 15 final, 22 January 2014

_____, *Communication on Energy 2020 - A Strategy for Competitive, Sustainable and Secure Energy*, COM(2010) 639final, 10 November 2010

_____, *Guidelines on State Aid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nergy 2014-2020*, OJ [2014] C 200/1

_____,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EXPLANATORY MEMORANDUM*, COM(2016) 767 final/2, 23 February 2017

_____, "Renewable energy directive", available at: https://ec.europa.eu/energy/en/topics/renewable-energy/renewable-energy-directive. [2018.10.22. 최종방문]

_____, *Staff Working Document - Guidance for the Design of Renewable Support Schemes*, SWD(2013) 439 final, 5 November 2013

_____, *Staff Working Document - The Support of Electricity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COM(2008) 19final, 23 January 2008

European Council, *Conclusions - Brussels, 23-24 October 2014*, EUCO 169/14, 24 October 2014

_____, "Presidency Conclusions - Brussels, 8/9 March 2007", 7224/1/07, 2 May 2007

Horlick, Gary N.; Peggy A. Clarke, "Rethinking Subsidy Disciplines for the Future: Policy Options for Reform", *20(3)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2017

Mesa Power's Notice of Intent to Submit A Claim to Arbitration under Section B of Chapter 11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MESA POWER GROUP, LLC v. GOVERNMENT OF CANADA*, available at: http://www.international.gc.ca/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topics-domaines/disp-diff/mesa.aspx?lang=eng. [2018.10.19. 최종방문]

*India - Certain Measures Relating to Solar Cells and Solar Modules*, Request for Consultations by the United States (Addendum), WT/DS456/1/Add.1, 13 February 2014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 9 May 1992, 771 UNTS 107

*United States - Certain Measures Relating to the Renewable Energy Sector*,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by India, WT/DS510/2, 24 January 2017

United States - *Countervailing Measures On Softwood Lumber From Canada, Constitution of the Panel established at the request of Canada*, WT/DS533/3, 9 July 2018

*United States - Countervailing Measures on Softwood Lumber from Canada,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by Canada*, WT/DS533/2, 16 March 2018

*United States - Countervailing Measures On Softwood Lumber From Canada, Request For Consultations By Canada*, G/L/1205; G/SCM/D116/1; WT/DS533/1, 30 November 2017

## □ 정부 보도자료 및 신문기사

European Commission, "2030 Energy Strategy", available at: https://ec.europa.eu/energy/en/topics/energy-strategy-and-energy-union/2030-energy-strategy. [2018.10.22. 최종방문]

International Energy Agency, "Policies and Measures - Korea - Feed-in Tariff for renewable energy", available at: https://www.iea.org/policiesandmeasures/pams/korea/name-22121-en.php [2018.10.21. 최종방문]

_____, "IEA/IRENA Joint Policies and Measures database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 Korea", available at: https://www.iea.org/policiesandmeasures/pams/korea/name-39025-en.php?s=dHlwZT1yZSZzdGF0dXM9T2s&s=dHlwZT1yZSZzdGF0dXM9T2s [2018.10.21. 최종방문]

_____, "Commentary: Fossil-fuel Consumption Subsidies Are Down, But Not Out" (2017.12.20.자), available at:

https://www.iea.org/newsroom/news/2017/december/commentary-fossil-fuel-consumption-subsidies-are-down-but-not-out.html. [2018.10.19. 최종방문]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 "Rethinking Energy 2017: Accelerating the Global Energy Transformation (2017)", available at: https://www.irena.org/documentdownloads/publications/irena_rethinking_energy_2017.pdf. [2018.10.21. 최종방문]

International Energy Agency, "Policies and Measures - Korea - Feed-in Tariff for renewable energy", available at: https://www.iea.org/policiesandmeasures/pams/korea/name-22121-en.php. [2018.10.21. 최종방문]

"One step closer to adopting the Clean Energy Package", Political Intelligence (2018.5.25.자), available at: http://www.political-intelligence.com/one-step-closer-adopting-clean-energy-package. [2018.10.22. 최종방문]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US-Canada Electricity Trade Increases" (2015.7.9.자), available at: http://www.eia.gov/todayinenergy/detail.php?id=21992. [2018.10.19. 최종방문]

USTR, "China Ends Wind Power Equipment Subsidies Challenged by the United States in WTO Dispute", Press Release (06/07/2011), available at: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1/june/china-ends-wind-power-equipment-subsidies-challenged. [2018.10.19. 최종방문]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2017.12

"신재생에너지법, 신에너지·비재생 폐기물 에너지 배제한 '재생에너지법'으로 개정 -IEA 국제기준에 따른 재생에너지만 지원해야", 산업일보(2018.10.1.자)

## □ 기타 참조 웹페이지

Eckart von Unger, “Local Content Requirements: Back-door Protectionism?”, BDI(2016.6.27.자), available at:https://english.bdi.eu/article/news/local-content-requirements-back-door-protectionism. [2018.10.21. 최종방문]

Eurostat, “Shar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in the EU Member States”, available at: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mages/c/c3/Figure_1-Share_of_energy_from_renewable_sources_2004-2016.png. [2018.10.22. 최종방문]

FSR, “EU Clean Energy Package, Online course - Background”, available at: http://fsr.eui.eu/training/energy/eu-clean-energy-package. [2018.10.22. 최종방문]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Austria”,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austria/summary/c/austria/s/res-e/sum/91/lpid/94. [2018.10.22. 최종방문]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Belgium”,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belgium. [2018.10.22. 최종방문]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Bulgaria”,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bulgaria/summary/c/bulgaria/s/res-e/sum/112/lpid/111. [2018.10.22. 최종방문]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Croatia”,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croatia. [2018.10.22. 최종방문]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Cyprus”,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cyprus/tools-list/c/cyprus/s/res-e/t/promotion/sum/116/lpid/115. [2018.10.22. 최종방문]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Czech Republic”,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czech-republic. [2018.10.22. 최종방문]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Denmark”,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denmark;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denmark/summary/c/denmark/s/res-e/sum/95/lpid/96. [2018.10.22. 최종방문]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Estonia”,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estonia. [2018.10.22. 최종방문]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Finland”,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finland. [2018.10.22. 최종방문]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France”,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france. [2018.10.22. 최종방문]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Promotion in France”,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france/tools-list/c/france/s/res-e/t/promotion/sum/132/lpid/131. [2018.10.22. 최종방문]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Germany”,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germany;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germany/summary/c/germany/s/res-e/sum/136/lpid/135. [2018.10.22. 최종방문]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Greece”,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greece. [2018.10.22. 최종방문]

90)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Hungary”,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hungary. [2018.10.22. 최종방문]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Ireland”,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ireland. [2018.10.22. 최종방문]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Italy”,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italy. [2018.10.22. 최종방문]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Latvia”,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en/search-by-country/latvia. [2018.10.22. 최종방문]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Lithuania",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en/search-by-country/lithuania. [2018.10.22. 최종방문]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Luxembourg",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en/search-by-country/luxembourg. [2018.10.22. 최종방문]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Malta",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en/search-by-country/malta. [2018.10.22. 최종방문]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Promotion in Netherlands",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en/search-by-country/netherlands/tools-list/c/netherlands/s/res-e/t/promotion/sum/172/lpid/171. [2018.10.22. 최종방문]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Norway",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norway;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Promotion in Norway",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norway/tools-list/c/norway/s/res-e/t/promotion/sum/378/lpid/379. [2018.10.22. 최종방문]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Poland",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poland;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poland/summary/c/poland/s/res-e/sum/176/lpid/175. [2018.10.22. 최종방문]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Portugal",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portugal. [2018.10.22. 최종방문]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Romania",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romania. [2018.10.22. 최종방문]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Slovenia",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slovenia/summary/c/slovenia/s/res-e/sum/192/lpid/191. [2018.10.22. 최종방문]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Spain",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spain;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spain/summary/c/spain/s/res-e/sum/196/lpid/195. [2018.10.22. 최종방문]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Sweden",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sweden/summary/c/sweden/s/res-e/sum/200/lpid/199. [2018.10.22. 최종방문]

"Res Legal: Legal Sources on Renewable Energy - United Kingdom", available at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united-kingdom;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united-kingdom/summary/c/united-kingdom/s/res-e/sum/204/lpid/203. [2018.10.22. 최종방문]

WTO, *Chronological list of disputes cases*, available at: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

기후변화법제 연구 18-17-⑩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WTO/FTA 합치성 확보방안 -

2018년 10월 28일 인쇄
2018년 10월 31일 발행

발 행 인 | 이 익 현

발 행 처 |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 화 : (044)861-0300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홈페이지 | http://www.klri.re.kr

값 7,000원

1. 본원의 승인없이 전재 또는 역재를 금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 978-89-6684-922-2 93360

**저자명**

이 천 기

**학 력**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실적 및 논문**

국제환경법의 최근 동향 –국제항공 부문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논의 동향–, 「국제법평론」 통권 제50호(2018.6.)

WTO협정상 수입 국경세조정에 관한 연구 – 탄소세와 배출권에의 적용가능성 및 그 시사점–, 「통상법률」 통권 제135호(2017.6.)

유럽사법법원의 Outokumpu Oy 사건에 대한 재조명 –환경문제와 관련된 WTO법리와의 비교 및 그 시사점–, 「통상법률」 통권 제121호(2015.2.)

캐나다—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사건 판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WTO보조금협정에서의 혜택분석 및 관련시장 결정을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Vol.12, No.2 (2014.7.)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지원사업에의 WTO보조금협정 적용가능성 연구 –'지역특정성' 등 특정성 요건을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Vol.12, No.1 (2014.3.)

우리나라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WTO협정 합치성에 관한 연구, 「국제경제법연구」 Vol.11, No.3 (2013.12)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WTO/FTA 합치성 확보방안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9 788960 849222 93360
ISBN 978-89-6684-922-2
값 7,000원